

# 정보보호 이론의 발전

김 철  
(광운대 수학과)

## I. 서 론

개방화(Open System)와 분산화(Downsizing)의 확산과 개인 통신 시스템의 실현, 초고속 통신망의 구축 등, 급속히 다가오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효용성과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저장중이거나, 전송중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많은 방법들이 이용된다. 정보에 물리적인 접근을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패스워드의 다단계 이용, 컴퓨터 운영체계의 강화 등 많은 수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on-line 통신망의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된다. 이 직접적인 보호방법은 평이한 정보(Plain Data)를 암호화된 정보(Cryptographic Data)로 만드는 정보보호 이론, 즉 암호학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 암호학은 암호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암호학(Cryptography)과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

을 평가하는 암호 분석학(Cryptanalysis)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이들 분야의 이론적인 배경은 정수론(Number Theory), 추상대수론(Abstract Algebra), 통계 및 확률론 등 수학의 많은 분야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 이론을 응용하여 정보 자체의 암호화에 의한 보호와 나아가 정보 사회의 필수요소인 문서인증(Message Authentication), 위조할수 없는 전자 서명(Digital Signature), DB(Database)의 보호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별히 전자 서명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며, 이밖에도 앞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될 IC 카드등에 이 정보보호 이론은 핵심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고대의 Caesar 암호 이후 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용된 각종 기계식 암호 시스템, 1950년대 이후 통신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등장한 전자적인 암호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보호 이론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2절에서는 응용

를 정의하고, 고대로부터 1970년대까지의 기간을 대칭형 암호 시스템으로 묶어서 제 3절에서 살펴본다. 제 4절에서는 1970년대 후반 등장한 비대칭형 암호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제 5절에서는 정보보호 이론의 응용분야를 기술하며, 끝으로 결론을 맺는다.

## II. 용어의 정의

### 1. 정보보호(Information 또는 Data Security)

시스템내의 각종 형태의 정보를 불법적인 제 3자의 침탈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상대에게만 정보의 소유를 허락하는 기밀성(Privacy)과 정보의 불법적인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보낸 이의 합법성을 보장해 주는 인증(Authenticity, Integrity)에 정보보호의 목적을 두고 있다.

### 2. 암호화(Encipherment, Encryption)

평문(Plaintext)을 수학적 일정 규칙(암호 알고리즘)에 키를 동작시켜 암호문(Ciphertext)을 얻는 과정을 말한다. 이의 역과정을 복호화(Decipherment, Decryption)라고 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암호학은 좁은 의미에서는 이 암호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암호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암호 분석학(Cryptanalysis)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3. 암호시스템(Cryptosystem)

적절한 암호화 기법을 채용하는 암호화, 복호화 과정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암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키에 관한 부분과 이 키를 사용하여 일정 단계의 법칙등에 의해 암호화 과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에 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4. 암호문 단독공격(Ciphertext Only Attack, COA)

암호 해독자는 오직 암호문을 이용하여 암호시스템의 키나 평문을 구하는 공격방법으로 평문이 일정한 패턴을 갖지 않는다면, 암호 키나 평문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

### 5. 기지 평문 공격(Known Plaintext Attack, KPA)

평문이 일정한 패턴을 갖는 문장일 경우, 암호 해독자는 전체 암호문중에서 일부 암호문에 대응하는 평문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들을 이용하여 키를 구하여 다른 평문을 구하는 공격형태이다.

### 6. 선택 평문 공격(Chosen Plaintext Attack, CPA)

암호 해독자가 임의로 선택한 평문을 임의의 키를 갖는 알고리즘에 입력시켜서 이에 대응하는 암호문을 구한다음, 도청된 암호문과 비교하여 키를 구하는 공격방법이다.

### 7. 수동공격(Passive Attack)

해독자가 통신망의 정보를 단순한 도청에 의해 해독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며, COA는 여기에 해당된다.

### 8. 능동공격(Active Attack)

해독자가 통신망에 직접 관여하여 정보를 변조하거나 위장 삽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KPA, CPA가 여기에 해당된다.

### 9. 암호 프로토콜(Cryptographic Protocol)

서로의 신뢰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쌍방 혹은 다자간에 암호 시스템을 이용,정보의 기밀성과 인증을 만족시키는 안전한 통신절차를 가리킨다.

### 10. 확산(Diffusion)과 혼동(Confussion)

안전한 암호 시스템은 평문의 정보를 암호문의 전체에 고루 분산시켜야 한다. 평문의 각 사용문자에 대한 정보가 암호문 전체에 분산되는 특성을 확산이라고 한다. 이 확산의 정도가 커질수록 암호 해독자는 더 많은 양의 암호문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안전한 암호 시스템은 암호 해독자가 평문의 문자와 암호문의 문자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혼동이라 한다.

### 11. 대칭형 암호 시스템(Symmetric Cryptosystem)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한 암호 시스템이다. 이 키는 쌍방이 공유하는 비밀 키이므로 전체 암호 시스템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절대요소이다. 따라서 안전한 키의 분배 및 키의 초기값 결정이나 갱신을 위한 키의 관리가 요구된다. 이것을 재래식(Conventional) 암호 시스템, 또는 키가 동일하므로 단일키(one-key) 암호 시스템이라고 한다.

### 12. 비대칭형 암호 시스템(Asymmetric Cryptosystem)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서로 다르며, 암호화(복호화) 키는 공개하고, 복호화(암호화) 키는 자신이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므로 키의 분배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것을 서로 다른 두개의 키가 사용되어 two-key 암호 시스템, 또는 두 키중 하나는 공개되므로 공개키(Public Key) 암호시스템이라고도 한다.

### Ⅲ. 대칭형 암호 시스템

본 절에서는 고대의 Caesar 암호인 단순 대치 암호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하여, 1,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기계식 암호 시스템, 계속하여 현대 암호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DES(Data Encryption Standard)등을 살펴보다

〈표 1〉 각 언어의 단문자 빈도(%)

영 어	E(12.31)	T( 9.59)	A( 8.05)	O(7.94)	N(7.19)
독 일 어	E(18.46)	N(11.42)	I( 8.02)	R(7.14)	S(7.04)
불 어	E(15.87)	A( 9.42)	I( 8.41)	S(7.90)	T(7.26)
이탈리아어	E(11.79)	A(11.74)	I(11.24)	O(9.83)	N(6.88)
스페인어	E(15.15)	A(12.69)	O( 9.49)	S(7.60)	N(6.95)
핀란드어	A(12.06)	I(10.59)	T( 9.76)	N(8.64)	E(8.11)

#### 나. 그 밖의 대치 암호 시스템

단순한 대치 암호 시스템인 Caesar 암호 시스템이외에 이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동음이의(Homophonic) 대치암호, 다표식(Polyalphabetic) 대치암호, 다문자(Polygram)

록 한다.

#### 1. 대치 암호 시스템

##### 가. 단순 대치 암호 시스템

본 방식은 평문의 각 문자를 영문의 알파벳 순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앞 또는 뒤의 문자로 대치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그 대치간격이 키(key)로서 작용하게 되며,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고대에 사용되었던 Caesar 암호 시스템에서는 이 키의 값이 3 이어서, 평문 MATH는 암호문 PDWK가 된다. 그러나 이 암호 시스템은 문자의 출현 빈도가 암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표 1과 같이 문자의 빈도수를 이용하여 CPA가 가능한 단점이 있다.

대치암호 등이 있다. 먼저 동음이의 대치암호는 평문의 각 문자에 여러개의 문자를 대응시켜 암호문을 만드는 것으로써 평문의 문자 빈도와는 반비례하는 만큼의 대응 두자리 숫자들을 지정하여 암호화 하는 방법이다. 즉, 빈

도수가 많은 A에는 23, 56, 34, 98등의 8개 숫자를, 빈도수가 A의 1/4인 P에는 59, 91의 2개 숫자를 부여하여 암호문 작성에 사용하는 것으로 미국의 Beale이 고안한 Beale암호가 그 예이다. 이러한 동음이의 대치암호에서는 평문의 각 문자에 대한 빈도가 위에서 언급된 빈도를 따르지 않게되며 암호문의 각

문자의 빈도차도 줄어든다. 따라서 암호문이 갖는 단문자 빈도의 특성이 감소하게 되나, 평문에서 보이는 두 문자 묶음, 또는 세 문자 묶음의 통계적인 특성은 여전히 암호문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있어 이러한 암호문 역시 COA가 가능하다. Gaine에 의하면, 두 문자 묶음의 빈도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두 문자 묶음의 빈도(%)

TH (6.3)	IN (3.1)	ER (2.5)	RE (2.5)	AN (2.2)	HE (2.2)
AR (2.0)	EN (2.0)	TI (2.0)	TE (1.9)	AT (1.8)	ON (1.7)
HA (1.7)	OU (1.4)	IT (1.4)	ES (1.4)	ST (1.4)	OR (1.4)

나. 다표식 대치 암호

다표식 대치암호는 다중 대치를 통하여 단순대치 암호와 동음이의 대치 암호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한 암호 시스템이다. 이 다표식 대치암호의 대표적인것은 프랑스의 암호학자

인 Vigenere(1523-1596)에 의해 제시된 Vigenere 암호이다. 이것은 표 3과 같이 26개의 영문자의 순서대로 이루어진 가로 26문자 세로 26문자의 표를 사용한다.

〈표 3〉 Vigenere 암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이 표를 이용하여 암호화와 복호화의 예를 들어보자. 평문이 ADDDZ이고 사용하는 키가 ABC라 하면, (평문의) A행과 (키의) A열이 만나는 A, (평문의) D행과 (키의) B열이 만나는 E, (평문의 다음) D행과 (키의) C열이 만나는 F등이 되어, 암호문은 AEFDA가 되며, 복호화과정은 행과 열을 바꾸어 복호화하면 된다. 이와 유사한 다표식 암호 시스템으로는 다른 순서의 영문자를 사용하는 Beaufort 암호 시스템 등이 있다. 이러한 주기적 대치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암호 시스템에 사용된 키의 주기(위의 예에서는 ABC이므로 주기는 3 이다.)를 결정하는 일이다. 주기를 비밀로 하는 주기적 대치암호는 1860년경 독일의 암호 해독가인 Kasiski가 주기를 찾는 방법을 제시하기 이전까지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1].

대치암호의 안전성은 키의 주기에 비례하므로 암호화 키를 평문의 길이만큼 길게하여 평문이 동일한 키로 암호화되는 경우를 없게 하면, 보다 안전한 대치암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긴 주기를 이용하는 다표식 대치 암호 시스템을 실제의 기기로 구현한 것으로는 50년대초까지 미 육군에서 사용되었던 Hagelin의 Hagelin Machine이 있는데, 이는 주기가 각각 다른 6개의 휠(wheel)을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널리 사용된 암호기계(물론 전기-기계식 기계이다.)로는 독일의 ENIGMA, 미국의 SIGABA, 일본의 RED, PUR-

PLE 등이 있다.

그러나 Hagelin Machine 등은 키가 큰 주기를 갖는 암호 시스템이지만, 난수성을 갖는 키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자의 통계적인 특성의 파악에 의한 공격에는 취약하다. 대치암호의 키가 큰 주기의 비주기성과 난수성을 가진다면, 이러한 암호시스템은 높은 안전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암호 시스템을 One-Time Pad라 한다. 이때 키는 이 암호 시스템의 이름 One-Time Pad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 한번만 사용하여야 최대 안전도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이 One-Time Pad의 가장 불리한 점은 키의 운영이다. 키도 최소한 평문의 크기만큼의 정보를 안전한 통로를 통해 암호문과는 별도로 전달하여야 하는 점이 있다. 이 One-Time Pad는 1918년경 미국 AT&T의 Verman에 의하여 처음 제시된 이래 그 원리는 현재까지도 계속 응용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스트림 암호 시스템은 비주기성과 난수성을 가진 긴 키수열을 선형 쉬프트레지스터를 이용하여 발생시키는 암호 시스템이다. 키가 Hagelin Machine과 같이 어떤 주기를 갖고 반복되는 방식을 주기적 스트림암호(Periodic Stream Cipher), Verman의 암호 시스템에서처럼 키가 One-Time Pad인 방식을 비주기 스트림 암호(Nonperiodic Stream Cipher)라 한다. 또한, 스트림암호는 평문과 키와의 관계에 따라 외부동기식(Synchronous)과 자체동기식

(Self-Synchronous)으로도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스트림암호의 장점으로는, 각 Bit들은 평문의 다른 Bit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즉시 암호화되므로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각 Bit단위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암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는 한 Bit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에러 확산이 적다는 것이다. 반면, 이 스트림암호는 어떤 Bit의 삽입이나 변경에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3. 다문자 대치 암호 시스템과 전치 암호 시스템

앞서 언급된 암호방식과는 달리 평문을 한 문자씩이 아닌 보다 큰 문자 블록단위로 암호화하여 해독을 어렵게하는 다문자(Polygram) 대치 암호 시스템이 있다. 이 암호 시스템의 대표적인것으로는 영국의 Playfair의 암호 시스템과 미국의 Hill의 암호 시스템이 있다. Playfair 암호는 영국의 Wheatstone에 의해 개발되어, 1854년 그의 친구인 Playfair에 의하여 발표된 암호 시스템으로 Boer전쟁과 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었다. 이 암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25개 문자의 5x5 행렬을 이용하며, I와 J중 I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24개 영문자를 중복없이 임의로 배열한것이다.

H A R P S  
I C O D B  
E F G K L  
M N Q T U  
V W X Y Z

원래의 Playfair 암호에서는 이 키 행렬의 생성을 위한 간단한 키 단어(Keyword)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키 행렬을 이용하여 암호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평문을 두 문자씩 나누어, 그 첫 문자를 @, 둘째 문자를 #라하면,

경우 1: @와 #가 같은 행에 있으면 암호문은 각각 바로 오른쪽 문자로 하고 마지막 열의 문자의 오른쪽은 첫째 열의 문자로 한다.

경우 2: @와 #가 같은 열에 있으면 암호문은 각각 바로 아래의 문자로 하고 마지막 행의 문자의 아래는 첫째행의 문자로 한다.

경우 3: @와 #의 열과 행이 모두 다를 경우, 암호문은 @과 #으로 그릴수 있는 사각형의 꼭지점의 문자로 하되 암호문의 첫째 문자는 @과 같은 행의 문자로, 암호문의 둘째 문자는 #와 같은 행의 문자로 한다.

경우 4: @와 #가 같은 문자이면, 그 사이에 임의의 문자를 넣는다.

경우 5: 평문의 문자의 수가 홀수이면, 평문의 끝에 임의의 문자를 넣어 암호화한다.

Playfair 암호의 예로 평문 MATHEMAT-

ICS를 위의 키 행렬을 사용하여 암호문으로 만들어 보자. 먼저 두 문자씩 나누고, 위의 경우를 적용하면 암호문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

평 문 : MA TH EM AT IC SZ  
 암호문: NH MP MV PN CO BS

이와같이 Playfair 암호는 평문 단문자의 통계적 특성이 암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평문의 두 문자 묶음등의 통계적 특성은 암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COA에 의해 해독될 수 있다.

다문자 대치 암호시스템의 다른 하나는 Hill의 암호이다. 이 Hill의 암호는 1920년경 미국의 수학 교수인 Hill에 의하여 제안된 암호 시스템으로 대수학(Algebra)를 이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자 대치 암호 시스템이다.

#### 4. 기계식 암호 시스템

위의 두가지 전치와 대치 기법을 합성시킨 암호시스템의 가장 현대적인 형태가 바로 후술할 DES이다. 이러한 합성 기법은 최초로 제 1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ADFGVX암호를 들 수 있으며,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1970년에 IBM의 Feistel에 의해 개발된 Lucifer 암호를 거쳐 DES에 이르고 있다 [1-3]. 제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암호화 장비가 등장하였다. 새로운 전기기계식 장치들은

보다 강한 암호를 생성할 뿐 아니라 정보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기술을 비약적으로 단축시켰다. 그중에서도 Enigma라고 불린 기계는 새로운 암호시대의 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세계 최초의 컴퓨터제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20년대 초반 독일의 Scherbius에 의해 상용목적으로 발명되어 30년대말 독일군에 의해 활용되었다. 이것은 타자기처럼 생긴 키보드와 한 개의 공통 축에 달린 세개의 회전자들을 복잡한 전기배선에 의해 연결한 전기기계식 암호장치이다. 사용자가 원문의 한 글자를 치면 회전자가 작동하여 그것을 암호화된 글자로 바꾸어 기계의 패널위에서 반짝이게 되는데 그 나타난 글자를 종이위에 옮겨적으며 한 글자씩 암호화 하는 것이다. 이 암호문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기계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회전자들의 원위치가 어디였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외에도 위에서 언급된 Hagelin의 M-209, Siemens와 Halske의 T-52 인쇄 가능 암호장비 등이 있다.

#### 5. DES

Shannon은 그의 1949년 논문[4]에서, 본고 제 2절에서 정의한 확산(diffusion)과 혼동(confusion)을 교대로 사용하는 변환(mixing transformation)을 이용한 암호 시스템의 구성을 제시하였으며, 이 Shannon의 구성

방법을 충실히 따른 것이 바로 DES이다[5]. DES는 64비트의 평문을 64비트의 암호문으로 만드는 블럭 암호시스템으로 64비트의 키를 사용한다. 이 64비트의 키-외부 키-중 56비트는 실제 키-내부 키-가 되고 나머지 8비트는 패리티 비트로 사용된다. DES는 16라운드(round)의 반복적인 암호화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각 라운드마다 56비트의 내부 키에서 나온 48비트의 키가 섞여서 암호문을 만든다. 복호화는 암호화 과정과 동일하나 사용되는 키만 역순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DES는 공표된 이래 많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된 두 가지는 56비트 키를 사용한 암호문은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키의 전수탐색(Key Exhaustive Search)이나 Time-Memory Trade-Off 방법에 의해 공격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DES의 중요한 비도를 결정하는 S-box에 대한 설계 고려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어떤 비밀방안(Trap Door)이 숨겨져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그후 DES를 해독하기 위한 H/W적인 혹은 이론적인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다. 대표적인 Differential 해독법(DC)과 선형 해독법(Liear Cryptanalysis, LC)에 대하여 언급한다. 1990년 Biham과 Shamir가 발표한 DC는 DES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관용 암호시스템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격방법으로 실용적 가치에 주목받고 있다[6],[7].

DC를 발표한 이래 DES와 비슷한 비밀키 암호방식에 관한 해독법 연구가 상당히 진보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이어서 논문에서 FEAL 암호를 31단까지 CPA에 의해 해독하고, 최근의 논문에는 16단의 DES에 대한 CPA가 성공함을 제시 하였다.

한편, Dawson과 Tavares[8]는 DES가 DC에 견디기 위해서는 S-box의 XOR 분포가 균일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완전하게 균일한 XOR 분포는 오히려 균일하지 않을 때보다 더 취약하다고 언급된 연구결과도 있다. 결국, DES가 DC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S-box만의 재설계로는 부족하며 암호함수 자체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DES의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 길이를 늘리는 방안과 S-box를 재설계하고 그 방법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1993년 Matsui는 LC로 DES를 분석했다. LC는 DES에서 유일한 비선형 구조인 S-box를 적당히 선형화시켜 암호분석하는 KPA로 CPA인 DC와 유사한 방법이다. DC와 비슷하게 DES를 선형 암호 분석하기 위해서는 확률이 최적인 선형근사가 필요하다. 좋은 선형근사(선형근사의 확률이 0 또는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선형근사)를 구하면 선형 암호분석은 쉽지만, 반대로 좋은 선형근사를 구할 수 없으면 선형 암호분석은 어렵다.이 방법을 이용하여 1994년 1월 12대의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여 50일 만에 16라운

드의 DES를 해독한 실증적인 결과가 발표되는 등 DES는 이제 암호 알고리즘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DC나 LC는 키의 전수 탐색방법보다 효율적이나 [9]에 의하면 DC 및 LC 방법이 키 전수 탐색방법보다 더 효율적이지 못한 S-Box의 설계조건을 제시하였다.

DES와 유사한 암호로는 일본의 FEAL (Fast data Encipherment ALgorithm) [10], 호주의 LOKI [11], 스위스의 IDEA (International Data Encryption Algorithm) [12], 러시아의 GOST (GOvernment STandard) [13] 등이 있다.

#### IV. 공개키 암호 시스템

대칭 암호 시스템에서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하여, 키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수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송수신자간에 비밀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키 분배 (distribution) 방법을 약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n$ 명이 가입된 통신망에서 서로 비밀통신을 할 경우  $n(n-1)/2$ 개의 키를 각자가 안전하게 관리하며, 이때  $n$ 이 커질수록 상당량의 정보가 된다.

이러한 키 관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암호 시스템이 바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다. 공개키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열되어 있는 전화

번호부처럼 공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키의 분배를 할 필요가 없어 디렉토리 화일 등에 공개 키를 알려주고 자신의 비밀키만을 철저히 관리하면 된다. 물론 공개 키와 비밀키의 두 키 사이에는 수학적인 관계가 있고 공개키에 의해서는 비밀키를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송신자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평문을 암호화 하여 공개적으로 보낸다. 이 경우 수신자만이 자신의 비밀키로 그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전자서명의 인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송신자가 자신의 이름등을 자신만의 비밀키로 암호화하여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보낸다. 그러면 수신자는 송신자가 공개한 공개키로 그 서명을 해독하여 그 서명이 송신자로부터 온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송신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보내더라도 송신자의 비밀키를 모르므로 수신자가 송신자의 공개키로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을 해독하면 엉뚱한 이름이 나오게 된다.

대표적인 공개키 암호 시스템인 DH (Diffie-Hellman)의 공개키 암호 시스템과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 1. DH 공개키 암호 시스템

Diffie와 Hellman은 1976년 공개된 채널 상에서의 비밀키의 교환에 관한 다음 개념을

제안하였고 [14],[15],[16], 언급된 트랩도어 개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동일한 비밀키를 얻게 되면 송신자와 수신자는 이 키를 공유하여, 각기 자신의 평문을 암호화하거나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게 된다.

소수 p를 법으로 하면 법에 관한 덧셈 등의 그 연산의 결과는 0,1,2,...p-1 사이의 p개의 정수들이 된다. 이 p개의 정수중에는 원시근(primitive element)이라 불리는 정수  $a$ 가 있다. 이 원시근이란 그것의 멱승  $a^0, a^1, a^2, \dots$ 들을 법 p에 관하여 간단히 하면 1,2,...p-1의 정수들로 되는 정수이다. 예를 들면 법이 7인 경우 3이 원시근이다.

$$3^0=1, 3^1=3, 3^2=2, 3^3=6, \\ 3^4=4, 3^5=5 \pmod{7}$$

이제 네트워크의 두 가입자 A,B 사이의 비밀키 생성 알고리즘을 살펴보자.

단계 1 : 가입자 A와 B는 1,2,...p-1의 정수 중 임의로 각각  $X_A$ 와  $X_B$ 를 선택하고 이를 비밀로 한다.

단계 2 : 가입자 A는  $a^{X_A} \pmod{p}$ 를 계산한 결과  $Y_A$  를 가입자 B에게 (또는 공개키들의 저장소에)보내고, 가입자 B도 역시  $a^{X_B} \pmod{p}$ 를 계산한 결과  $Y_B$  를 가입자 A에게 (또는 공개키들의 저장소에) 보낸다.

단계 3 : 가입자 A는 받은  $Y_B$ 를 사용하여 가입자 B와 공유할 수 있는 비밀키 k를 다음과 같이 만든다.

$$k = Y_B^{X_A} \pmod{p}$$

B도 같은 방법으로

$$K = Y_A^{X_B} \pmod{p}$$

를 만든다. 이때  $Y_B^{X_A}$ 나  $Y_A^{X_B}$ 는 모두  $a^{X_A X_B}$ 이어서 서로 같은 키를 갖게 되어 이 키 k를 사용하여 암호문을 만들고 해독할 수 있다.

이 DH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안전성은 이산대수(Discrete Logarithm)문제에 근거하고 있다. 이산대수 문제란 X를 알고 있을 때  $Y = a^X$ 를 계산하여 Y를 알기는 쉬워도, Y를 알고 있을 때  $X = \log Y$ 를 계산하여 X를 계산하기는 아주 어렵다는 것이다.

$a$

위의 단계 2에서  $Y_A$  또는  $Y_B$ 가 공개되어도  $X_A$  또는  $X_B$ 를 구하는데 걸리는 계산시간이 커지게 되어 이에 근거하는 암호 시스템은 안전하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소수 p의 길이가 1,000비트일 때  $X_A$ 로부터  $Y_A$ 를 계산하거나  $Y_B$ 와  $X_A$ 를 이용하여 k를 계산하는데 1,000비트길이의 수를 약 2,000번 곱하는 연산이 필요하지만, 역으로 log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2100 (약 1030)번 이상의 연산이 필요하다. 이산대수 문제는 현재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산대수 문제의 해를 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려는 여러 알고리즘이 발표되고 있다.

## 2.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

1978년 Rivest, Shamir, Adleman에 의하

여 제안된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17]은 약 200자리 정수의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에 그 안전성을 근거하고 있다. 이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는 Euler(1707-1783)의 정리가 쓰이는데 먼저 이를 살펴보자.

양의 정수의 집합  $1, 2, \dots, n-1$ 의 원소들 중에서  $n$ 과 서로소의 관계에 있는 원소들의 개수를  $\varphi(n)$ 으로 나타내고, 이를 Euler의  $\varphi$ -함수라 한다. 특별히 소수인  $p$ 에 대하여  $\varphi(p) = p-1$ 이다. 큰 정수  $n$ 에 대하여  $\varphi(n)$ 값을 구하기 위하여는  $n$ 의 소인수 분해가 필수적이다. 즉  $n$ 이 두 소수  $p$ 와  $q$ 의 곱일때  $\varphi(n) = (p-1)(q-1)$ 이다. 따라서 소인수 분해 없이  $\varphi(n)$ 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Euler의 정리란 서로소인 두 양의 정수  $a$ 와  $m$ 에 대하여

$$a^{\varphi(n)} \equiv 1 \pmod{n}$$

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제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알고리즘과 간단한 보기를 살펴보자.

단계 1 : 두 개의 큰 소수  $p$ 와  $q$ 를 선정하여 자신의 비밀키로 한다.

단계 2 :  $n = pq$ 인  $n$ 을 공개하고  $\varphi(n)$ 과 서로소인 임의의 정수  $e$ 를 선택하여 공개키로 한다.

단계 3 :  $e \cdot d \equiv 1 \pmod{\varphi(n)}$ 되는  $d$ 를 Euclid 호제법 등으로 계산하여 비밀키로 한다. 즉  $p$ 와  $q$ , 그리고  $d$ 는 비밀키로,  $n$ 과  $e$ 는

공개키로 한다.

암호화 단계 : 평문  $M$ 을 공개키  $e$ 를 사용하여  $M^e$ 한 다음 법  $n$ 으로 간단히 한다. 즉 암호문  $C$ 는 다음과 같다.

$$C = M^e \pmod{n}$$

복호화 단계 : 암호문  $C$ 를 비밀키  $d$ 를 사용하여  $C^d$ 한 다음 법  $n$ 으로 간단히 한다. 다시 평문이 나오게 되는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C^d = (M^e)^d = M^{ed} = M \pmod{n}$$

여기서  $t = ed - 1 \pmod{\varphi(n)}$ 에서 유도되는  $ed = t\varphi(n) + 1$ 을 만족하는 정수이다.

이제 간단한 보기를 살펴보도록 한다.

단계 1 :  $p = 11, q = 3$ 이라 하자.

단계 2 : 33을 공개하고  $\varphi(33) = (11-1)(3-1) = 20$ 과 서로 소인 정수중 임의로  $e = 3$ 을 선택하여 공개한다.

단계 3 :  $3 \cdot d \equiv 1 \pmod{20}$ 이므로  $d = 7$ 이다.

(이 보기는 간단하여 쉽게 7이 구해지지만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다.이 계산은 두 소수를 알고 있는 자신만이 할 수 있다.) 비밀키는  $p = 11, q = 3, d=7$ 이며, 공개키는  $n = 33$ 과  $e = 3$ 이다.

암호화 단계 : 어떤 가입자가 자신의 공개키  $a = 33$ 과  $e = 3$ 을 마치 전화번호부에서 찾듯이 찾아내어 평문  $M = 5$ 를 암호화하여 암호문  $C = 5^3 = 125 = 26 \pmod{33}$

을 보낸다.

복호화 단계 : 이러한 암호문  $C = 26$ 을 받았다면 자신은 자신만의 비밀키  $d = 7$ 을 이용하여 267 을 법 33에서 계산하여 평문  $M = 5$ 를 얻을 수 있다.

보다 안전한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위하여  $p$ 와  $q$ 를 선택하는 조건,  $e$ 와  $d$ 에 대한 조건등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공개키  $n$ 과  $e$ 를 가지고 비밀키  $d$ 를 구할 수만 있다면 무용지불이 된다.  $d$ 를 찾기 위하여는  $\phi(n)$ 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n$ 의 소인수 분해가 필요하다.  $p$ 와  $q$ 가 100자리의 소수이고 따라서  $n$ 이 200자리의 합성수라면 현재의 알고리즘과 전자기술로  $n$ 을 소인수 분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구현한(표 4참조) 현재의 상용장비들은 512비트의 키, 즉 약 154자리 키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56비트의 키를 사용하는 DES의 속도-약 100만 bps에 비하여 RSA의 속도는 1000bps로 늦은 이유 중의 하나이다.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에 근거하는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들과 비슷한 암호 시스템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1979년 Rabin의 암호시스템[18], 1980년 William의 암호 시스템[19]등이 있다

최근 1993년 초에는 RSA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PC상의 구현이 어렵고 전자서명상의 취약성이 발견되었기때문에 RSA 공개키 암

호 시스템과 같은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에 기초하는 LUC공개키 암호 시스템[20]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는 Lucas(1842-1891)의 수열등을 이용하여 제안된 공개키 암호 시스템으로 뉴질랜드의 콘소시엄에 의해 특허로 보호받으며 구현되고 있다.

RSA가 제안된 이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 RSA는 해독되지 않는다고 밝혀지고 있다. Alexi 등은 RSA에 의한 암호문 전체를 해독하는 것만큼 RSA에 의한 암호문의 한 비트를 회복하는 것도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내었다. RSA의 해독은 전적으로 큰 수의 소인수 분해에 달려 있다. 빠른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은 Lenstra와 Pomerance 등에 의하여 현재까지도 연구되어 오고 있다. 지난 10년간 큰 소수의 소인수 분해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는데 RSA가 제안된 당시에는 40자리 정도가 소인수 분해될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최근에는 110자리 이상 소인수 분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H/W 기술과 이론의 발전에 기인한다. Carson 등에 의해 1987년 제안되었고, 1989년 암호학회에서 Lenstra 등은 300 MIPS 기계를 1년간 가동하여야만 111자리를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컴퓨터가 쉬는 시간을 이용 몇 십개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수주안에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특별한 목적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종래의 사고방법과는 다른 개념이

었다. 150자리의 특별한 정수는 인수분해가 되기도 하는 등 많은 수학자들이 큰 정수의 인수분해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21-25].

RSA 암호시스템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은 이 RSA가 과연 소인수 분해만큼 안전한가 하는 것이다. 물론 RSA를 해독하기 위하여 RSA에 법으로 사용되는 큰 정수를 인수분해 하는 것보다 빠른 방법은 없으리라 추측되고 있지만, RSA가 그 안정성은 전적으로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에 기인한다고는 증명되어 있지 않다.

## V. 응 용

정보보호 기술의 응용분야는 크게 나누어 통신 정보의 보호(Communication Security, COMSEC)와 컴퓨터 정보의 보호(Computer Security, COMPSEC)로 나눌 수 있다. 통신 정보라함은 음성 정보를 포함하여, 각종 데이터 통신방식등에서 소통되는 모든 정보를 말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통신로 상의 불법적인 정보누출을 방지하는 것이 통신 정보보호의 목적이다. 이러한 통신 정보의 위협은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도청이나 도사로 개인이나 기업의 기밀을 악용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경우 수동공격 방법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 불법

적인 도청은 금지되어 있다.

통신 정보보다 복잡한 형태인 컴퓨터 정보는 은행, 기업, 관공서 등에 컴퓨터 보급의 확대로 각종 주요한 정보가 자동 생산, 가공, 처리, 관리됨에 따라 컴퓨터 내부 정보의 변조나 악용의 우려가 높다. 더불어서 통신망의 확장으로 지금은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세계 어느 곳과도 통신이 가능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Internet를 통하여,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으로 컴퓨터내에 저장된 귀중한 정보가 파괴되거나 조작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도에 해커가 청와대의 컴퓨터에 불법으로 위장 침입하여 허위문서를 하달하여 사회 문제가 된 바도 있다. 따라서, 컴퓨터 정보보호 기술은 파일보호 기술, 접근제어 기술, Network 시큐리티 기술, 신분 확인 기술, 패스워드 관리 기술 등이 요구되며, 이러한 보호 기술들은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컴퓨터 정보의 위협은 능동 공격의 경우가 많아 재래식 암호 시스템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공개키 암호 시스템과 암호 프로토콜 기법등을 활용하여야 안전한 정보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무역 정보거래에서 효율적인 처리방식으로 대두하고 있는 EDI시스템에서 보호기술,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메시지를 자동 전달하는 MHS(Message Handling System)의 보호기술, Internet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 우편 시스템의 보호기술, 향후 전산망을

통하여 서비스가 예상되는 전자 선거시스템의 보호기술등 다양한 컴퓨터 정보의 보호기술이 요구된다. 은행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은행간 전자 자금 송금(Electronic Funds Transfer, EFT)시스템이나 슈퍼마켓의 거래 시점 자동 결제(Point Of Sale, POS) 단말의 보호기술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 이외에 정보보호 기술은 정보가 발생하는 시간적, 공간적인 어떠한 곳에서 정보보호가 요구되는 정보유통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으며 컴퓨터 범죄나 컴퓨터 바이러스 대책으로도 정보보호 기술이 활용된다. 이를 위한 정보보호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특집호의 기타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에 본 절에는 정보보호 기술의 각종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VI. 결 론

본고에는 정보보호 이론의 기본 개념과 고대 암호 시스템으로부터 현대 암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인 소개를 하였다. 정보보호 이론의 역사는 유구하며 현대적인 암호는 통신과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였다. 재래식 암호 시스템은 주로 제 3 자에 의한 불법적인 도청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안전한 정보 전달시 요구되는

인증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키 관리상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키로 활용하는 ID-Based 암호 시스템은 정보보호 기술의 도입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쌍방간 또는 화상회의 등의 다자간 통신이 요구됨에 따라 암호 프로토콜을 응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통신자간의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정보보호 기술의 실제 도입시에는 본고에서 살펴본 각종 보호기술을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시스템이 요구하는 보안 서비스에 맞도록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정보보호 기능의 구현에 따른 사용의 불편함이 생기는 문제는 사용의 편리성과 보호기술간의 타협이 요구되며 망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화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보호 기술의 발전은 암호설계와 해독기술간의 상호보완적 발전이 지속될 것이며 최신 신경망 이론, 인공지능 이론과 카오스 이론 등을 이용한 새로운 암호 시스템의 구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Machine Learning 기술을 응용한 해독 기술도 가능하리라 본다.

최근 21세기를 대비하여 미국의 Super Highway 계획, 일본의인사회 자본 계획, 싱가포르의 IT-2000 계획등에 부흥하여 우리나라도 초고속 통신망 구현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통신망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망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보보호 기술의 도입을 필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 철, “암호학의 이해”, 1996 영풍문고
- [2] D. E. Denning, “The Data Encryption Standard :Fifteen years of public security”, Dist. Lecture, 6th Annual Comp. Security Appl. Conf., IEEE Comp. Soc. Press pp. x-xv 1990.
- [3] H.Feistel, “Cryptography and Computer Privacy”, Sci. Amer., vol. 228, no.5, pp. 15-23. May 1973.
- [4] C.E.Shannon, “Communication Theory of Secrecy Systems”, Bell Syst. Tech. J., vol. 28, pp. 656-715 Oct. 1949.
- [5] “Data Encryption Standard(DES)”, National Bureau of Standards(U.S.),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Publication 46,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Springfield, VA, Apr. 1977.
- [6] E. Biham and A. Shamir, “Differential Cryptanalysis of DES-like Cryptosystem”, J. of Cryptology, vol. 4, pp. 3-72, 1991.
- [7] E. Biham and A. Shamir, “Differential Cryptanalysis of the full 16-round DES”, Proc. of Crypto 92, 1992.
- [8] M. H. Dawson and S. E. Tavares, “An Expanded Set of S-Box Design Criteria Based on Information Theory and Its Relation to Differential-Like Attack”, Proc. of Eurocrypt 91, 1991.
- [9] K.Kim, S.Lee, S.Park and D.Lee, “DES can be Immune to Linear Cryptanalysis”, To appear in 1994 Workshop on Selected Areas in Cryptography, Kinsgton, Canada, May 5~6, 1994.
- [10] A.Shimizu and S. Miyaguchi “Fast Data Encipherment Algorithm FEAL”, Proc. of Eurocrypt 91, 1991.
- [11] L. Brown, K. Pieprzyk and J. Seberry, “LOKI - A Cryptographic Primitive for Authentication and Secrecy”, Proc. of Auscrypt 90, 1990.
- [12] X. Lai, “On the Design and Security of Block Ciphers”, ETH Series in Information Processing, vol 1, 1992.
- [13] “Cryptographic Protection for Data Processing Systems”, GOST (Government Standard) of the USSR 28147-89, 1989.
- [14] W. Diffie and M. E. Hellman, “New

- Directions in Cryptography”, IEEE Trans. Inform. Th., vol 22, pp. 644–654, Nov. 1976.
- [15] W. Diffie and M. E. Hellman, “Multi-user Cryptographic techniques”, in proceedings of AFIPS National Computer Conference, pp. 109–112 N.Y, June 7–10, 1976.
- [16] R.C. Merkle and M.E. Hellman “Hiding Information and Signatures in Trapdoor Knapsacks”, IEEE Trans. Inform. Th., vol. 24, pp. 525–530, Sep. 1978.
- [17] R.L. Riest, A. Shamir and L. Adleman, “A Method for obtaining Digital Signatures and Public Key Cryptosystems”, vol. 21, no. 2, pp. 120–126 Feb. 1978,
- [18] M. O. Rabin, “Digitalized Signatures and Public – Key Functions as Intractable as Factorization,” MIT Laboratory for Computer Science, MIT/LCS/TR–212, Jan. 1979.
- [19] H. C. Williams, “A Modification of the RSA Public – Key Cryptosystem”, IEEE Trans. Inform. Th., vol. 26, pp. 726–729, Nov. 1980.
- [20] Peter Smith, “LUC Public Key Encryption”, Dr. Dobb’s Journal, pp. 37–42, Jan. 1993.
- [21] C. Pomerance, J.W. Smith and R. Tuler, “A Pipe–line Architecture for Factoring Large Integers with the Quadratic Sieve Algorithm”, SIAM J. Comp. vol. 17, pp. 387–403, 1988.
- [22] H. W. Lenstra, Jr., “Integer Programming with a Fixed Number of Variables”, Math. Operations Res., pp. 15–24, 1979.
- [23] A. K. Lenstra and H. W. Lenstra, Jr., “Algorithms in Number Theory”, in Hand–book of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J. Van Leeuwen, Ed., Cambridge, MA : MIT Press, pp. 673–716. 1990.
- [24] A. K. Lenstra and M. S. Manasse, “Factoring by Electronic Mail”, Proc. of Eurocrypt 89, 1989.
- [25] C. Pomerance, “Fast, Rigorous Factorization and Discrete Logarithm Algorithms”, in Discrete Algorithms and Complexity, D. S. Johnson, T. Nishizeki, A. Nozaki, and H. S. Wilf, Eds., New York : Academic Press, pp. 119–143, 1987.

## ❖ 해외정책정보 ❖

---

- 세계 주요국가의 범죄
- 영국의 경찰 · 학교 연계제도에 관한 소고



## 일본의 외국인 범죄 실태('96 상반기)와 대책의 개관

### [요 약]

- '96.5.1 현재 불법체류자는 28만 4천명으로 '93년 동 시기의 29만 8천명을 정점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불법 취업자이다
  - ※ '94년 중 신규 입국자는 293만명으로 최고였던 '92년의 325만명 이후 감소추세
- 올 상반기의 외국인 범죄는 형법범 8,250건(전년 동기대비 482건 증)에 3,112명(7명 감)으로서 이 가운데 강력범은 76건(6건 감)에 111명(24명 증)이다.  
특별법범은 4,109건(전년 동기대비 638건 증)에 3,128명(473명 증)으로서 이 가운데 마약사범은 632건(67건 증)에 424명(15명 증)이다
  - ※ 강력범죄의 71.2%, 마약사범의 70.7%는 불법체류자에 의한 것임
- 외국인 형법범 피해자 인지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157건(5.6%)증가한 2,964건이다. 국적별로는 형법범은 중국이 3,419건(41.4%)에 1,343명(43.2%), 한국이 1,011건(12.3%)에 363명(11.7%), 페루가 862건(10.4%)에 169명(5.4%) 순으로 나타났다.
  - ※ 전년 동기 대비 299건(42.0%) 34명(10.3%)증가
- 마약사범은 이란 166명, 필리핀 145명, 한국 2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 경찰당국은 외국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단밀항, 불법고용, 여권위조 등 불법체류조장범죄의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강력범죄, 마약사범, 권총밀수, 국제적 직업범죄조직 등 치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범죄자 검거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관계단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불법취업의 방지와 외국인의 생활 안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본고는 동경주재 외사협력관 김중겸 총경의 자료협조에 의해 작성된 것임.

## I. 범죄상황

### 1. 형법범

#### 가. 개 요

검거 건수는 8,250건, 검거 인원은 3,112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건수는 482건(6.2%) 증가했으나 인원은 7명(0.2%) 감소했다<표 1>

죄종별로는 전년동기간 대비, 지능범의 검거가 684건 201명 증가했으며 이는 유가증권 위(변)조 동행사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표 2>

<표 1> 외국인의 죄종별 형법범 검거상황

구분	년도	'91	'92	'93	'94	'95		'96	
						1~6월		1~6월	증가율%
총 수	건 수	6,990	7,457	12,771	13,321	17,213	7,768	8,250	△ 6.2
	인 원	4,813	5,961	7,276	6,989	6,527	3,119	3,112	▼ 0.2
강력범	건 수	126	161	218	221	176	82	76	▼ 7.3
	인 원	126	185	246	230	201	87	111	△ 27.6
조폭범	건 수	128	196	244	220	247	119	157	△ 31.9
	인 원	174	213	277	246	255	118	142	△ 20.3
절도범	건 수	4,506	4,277	9,134	10,120	14,145	6,474	6,383	▼ 1.3
	인 원	2,493	2,944	3,995	3,937	3,900	1,917	1,776	▼ 7.4
지능범	건 수	377	723	777	394	770	189	873	△361.9
	인 원	94	443	260	218	302	108	309	△186.1
기 타	건 수	1,853	2,100	2,398	2,366	1,875	904	761	▼ 15.8
	인 원	1,926	2,176	2,498	2,358	1,869	889	774	▼ 12.9

〈표 2〉 외국인 형법범 검거상황 추이

	'91	'92	'93	'94	'95	'95상반기	'96상반기
검거건수	6,990	7,457	12,771	13,321	17,213	7,768	8,250
검거인원	4,813	5,961	7,276	6,989	6,527	3,119	3,112

나. 특 징

1) 조직화 집단화 경향

'96 상반기에 있어서는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 집단화경향이 현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인에 의한 연쇄강도사건, 월남인에 의한 오토바이 등을 대상으로 한 광역절도사건 등 연쇄 광역사건의 검거가 두드러졌다. 또한 다국적 외국인그룹에 의한 사건도 있었다.

이들 외국인그룹의 범죄수법은 귀금속점, 의류점, 가전양판점, 등을 대상으로 한 절도, ROM교체 위조, 프리페이카드를 이용한 빠친코점 대상사범, 고주파 전파발신기에 의한 자동판매기 절도 등 다양화 하고 있으며, 그룹에 의한 강도사건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대담해져 범행현장 주변에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치안상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 강력범 검거인원의 증가와 약 7할을 점하는 불법체류자

'96 상반기의 외국인 강력범의 검거는 76건 111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건수는 6건(7.3%) 감소하였으나 인원은 24명(27.6%)증가하였고 〈표 3〉

〈표 3〉 외국인 강력범 검거상황 추이

구분	년도	'91	'92	'93	'94	'95	'96		
							1~6월	1~6월	증가율%
살 인	건 수	25	35	58	48	36	13	28	△ 115.4
	인 원	33	39	72	53	41	13	35	▼ 169.2
강 도	건 수	73	95	124	103	104	55	41	▼ 25.5
	인 원	69	118	142	139	135	60	68	△ 13.3
방 화	건 수	3	9	17	43	21	5	1	△ 80.0
	인 원	2	5	10	11	10	5	2	△ 60.0
강 간	건 수	25	22	19	27	15	9	6	▼ 33.3
	인 원	22	23	22	27	15	8	6	▼ 33.3
합 계	건 수	126	161	218	221	176	82	76	▼ 7.3
	인 원	126	185	246	230	201	87	111	△ 27.6

검거인원을 가해양태별로 보면 외국인끼리의 흥기사용 살인, 강도사건의 증가가 눈에 띄며 방화 강간사건에 있어서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태반을 점하고 있다.<표 4>

또한 전체 강력범 피의자 중 79명(71.2%)이 불법체류자로서 불법체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다발하고 있다.

<표 4> 죄종별 외국인 강력범죄의 가해양태 (1~6월, 인원)

양태	죄종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합계 구성비%	
피의자와 동국적의 외국인 에게 피해를 가한 피의자	'95	6	19	0	1	26	29.9
	'96	24	25	0	0	49	44.2
피의자와 이국적의 외국인 에게 피해를 가한 피의자	'95	0	2	2	0	4	4.6
	'96	4	4	0	0	8	7.2
일본인에게 피해를 가한 피의자	'95	7	39	7	4	57	65.5
	'96	7	39	6	2	54	48.6
합 계	'95	13	60	9	5	87	100.0
	'96	35	68	6	2	111	100.0

3)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인이 대부분

'96 상반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 국적별 현황은 아시아주 국가가 검거건수 6,271건(전체의 76.0%), 검거인원 2,461명(79.1%)으로서 그 비율이 극히 높으며<표 5>

특히 중국인은 검거건수 3,419건(전체의 41.4%), 검거인원 1,343명 (43.2%)으로 수위를 점하고 있고 아시아에 있어 북한인 한국인 월남인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남아메리카에 있어서는 콜롬비아인의 검거인원 증가가 눈에 띈다.<표 6>

〈표 5〉 국적별 형법범 검거건수

국 적 등		'95(1~6월)		'96(1~6월)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증감율(%)
아 시 아	한 국	712	9.2	1,011	12.3	△ 42.0
	북 한	15	0.2	46	0.6	△ 206.7
	중 국	3,534	45.5	3,419	41.4	▼ 3.3
	대 만	366	4.7	247	3.0	▼ 32.5
	홍 콩 등	15	0.2	21	0.3	△ 40.0
	필 리 핀	327	4.2	295	3.6	▼ 9.8
	타 이	186	2.4	101	1.2	▼ 45.7
	월 남	329	4.2	487	5.9	△ 48.0
	말레이시아	270	3.5	199	2.4	▼ 26.3
	파키스탄	38	0.5	62	0.8	△ 63.2
	방글라데시	11	0.1	20	0.2	△ 81.8
	이 란	165	2.1	158	1.9	▼ 4.2
	기 타	276	3.6	205	2.4	▼ 25.7
	소 계	6,244	80.4	6,271	76.0	△ 0.4
유 럽	영 국	23	0.3	21	0.3	▼ 8.7
	러 시 아	70	0.9	65	0.9	▼ 7.1
	프 랑 스	12	0.2	9	0.1	▼ 25.0
	기 타	29	0.4	58	0.7	△ 100.0
	소 계	134	1.7	153	1.9	△ 14.2
미 주	미 국	265	3.4	64	0.8	▼ 75.8
	브 라 질	302	3.9	495	6.0	△ 63.9
	페 루	510	6.6	862	10.4	△ 69.0
	콜롬비아	100	1.3	228	2.8	△ 128.0
	기 타	120	1.5	122	1.5	△ 1.7
	소 계	1,297	16.7	1,771	21.5	△ 36.5
아프리카		71	0.9	30	0.4	▼ 57.7
오세아니아		22	0.3	24	0.3	△ 9.1
무국적·국적불명		2	0.0	1	0.0	
총 계		7,768	100.0	8,250	100.0	△ 6.2

〈표 6〉 국적별 형법범 검거인원

국 적 등		'95(1~6월)		'96(1~6월)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증감율(%)
아 시 아	한 국	329	10.5	363	11.7	△ 10.3
	북 한	11	0.4	19	0.6	△ 72.7
	중 국	1,366	43.8	1,343	43.2	▼ 1.7
	대 만	68	2.2	79	2.5	△ 16.2
	홍 콩 등	21	0.7	18	0.6	▼ 14.3
	필 리 핀	141	4.5	137	4.4	▼ 2.8
	타 이	93	3.0	52	1.7	▼ 44.1
	월 남	108	3.5	142	4.6	△ 31.5
	말레이시아	78	2.5	81	2.6	△ 3.8
	파 키 스탄	20	0.6	33	1.1	△ 65.0
	방글라데시	10	0.3	18	0.6	△ 80.0
	이 란	69	2.2	71	2.3	△ 2.9
	기 타	106	3.4	105	3.4	▼ 0.9
	소 계	2,420	77.6	2,461	79.1	△ 1.7
유 럽	영 국	26	0.8	21	0.7	▼ 19.2
	러 시 아	74	2.4	64	2.1	▼ 13.5
	프 랑 스	12	0.4	9	0.3	▼ 25.0
	기 타	28	0.9	59	1.9	△ 110.7
	소 계	140	4.5	153	4.9	△ 9.3
미 주	미 국	78	2.5	63	2.0	▼ 19.2
	브 라 질	140	4.5	135	4.3	▼ 3.6
	페 루	194	6.2	169	5.4	▼ 12.9
	콜롬비아	18	0.6	233	1.1	△ 83.3
	기 타	90	2.8	48	1.5	▼ 46.7
	소 계	520	16.7	448	14.4	▼ 13.8
아프리카		13	0.4	22	0.7	△ 69.2
오세아니아		23	0.7	28	0.9	△ 21.7
무국적·국적불명		3	0.1	0	0.0	
총 계		3,119	100.0	3,112	100.0	▼ 0.2

## 2. 마약사범

### 가. 개 요

'96 상반기의 외국인에 의한 마약사범 검거건수는 632건, 검거 인원 424명 (전 검거인원의 4.0%)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건수 67건 (11.9%), 인원 15명 (3.7%)이 증가하는 등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 각성제사범의 증가가 두드러진다(표 7)

〈표 7〉 마약사범 외국인 검거상황(인원)

년별	법령별 합계	각성제 단속법	대마 단속법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아편	일본인포함 순검거인원	
				코카인	헤로인	향정신약			
'95 1-6월	825	485	178	110	40	51	12	52	19,026
	409	229	97	60	15	36	7	23	9,557
'96 1-6월	424	314	64	32	15	10	4	14	10,490
증 감	△15	△85	▼33	▼28	0	▼26	▼3	▼9	△933
증감율(%)	△3.7	△37.1	▼34.0	▼46.7	0	▼72.2	▼39.1	▼39.1	△9.8

국적별로는 이란인 166명(39.3%)으로 제일 많고 두 번째는 필리핀인이 145명(34.2%)이고 한국인 24명(5.7%), 미국인과 태국인이 각각 9명(2.1%)이다.〈표 8〉

〈표 8〉 필리핀인 이란인에 의한 마약사범 검거상황 추이(인원)

구분별	년별	'91	'92	'93	'94	'95 1-6월	'96 1-6월	
		검거인원	303	556	737	804	825	409
內필리핀인	94	217	215	186	294	160	145	
內이란인	17	38	195	270	253	105	166	
구 성 비		36.6%	45.9%	55.6%	56.7%	66.3%	64.8%	73.4%

마약종류별로 피의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는 각성제의 경우 외국인피의자 314명 중 필리핀인 143명(45.5%)이고 코카인의 경우 외국인피의자 15명 중 이란인 7명 (46.7%), 헤로인 경우 외국인피의자 10명 중 월남인 7명(70.0%), 향정신약의 경우 외국인피의자 4명 중 태국인 4명 (100.0%), 아편의 경우 외국인피의자 14명 중 이란인 11명(78.6%), 대마의 경우 외국인피의자 64명 중 이란인 25명(39.1%)이다.〈표9〉 또한 불법체류자가 상당수 이에 관여하고 있다〈표 10〉

〈표 9〉 외국인에 의한 마약사범법령별 국적별 검거인원 상황(1-6월)

국적등별 법령별		총	한	북	중	대	이	태	월	필	말	영	독	미	콜	기	
		수	국	한	국	만	란	국	남	핀	레이	국	일	국	롬	비	타
											아				아		
총 수	'95	409	10	2	3	1	105	16	22	160	9	6	5	8	7	55	
	'96	424	24	2	4	1	166	9	8	145	2	1	2	9	6	45	
	증감	+15	+14		+1		+61	-7	-14	-15	-7	-5	-3	+1	-1	-10	
각성제 단속법	'95	229	9	2	2		44	4	1	153	1			4	1	8	
	'96	314	21	2	3	1	121	3		143				2	2	16	
	증감	+85	+12		+1	+1	+77	-1	-1	-10	-1			+2	1	+8	
대 마 단속법	'96	97	1		1		35	5		7		5	4	4		35	
	'96	64	3		1		25	1		2	1	1	2	6		22	
	증감	-33	+2				-10	-4		-5	+1	-4	-2	+2		-13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계	'96	60				1	7	6	21		8	1	1		6	9
		'96	32					9	5	8		1			1	4	4
		증감	-28					-1	+2	-1	-13		-7	-1	-1	+1	-2
	코 카 인	'96	15					5								6	4
		'96	15					7		1		1			1	4	1
		증감						+2		+1		+1			+1	-2	-3
	헤 로 인	'96	36				1	1		21		8	1	1			3
		'96	10						1	7							2
		증감	-26				-1	-1	+1	-14		-8	-1	-1			-1
	향정 신약	'96	7						6								1
		'96	4						4								
		증감	-3						-2								-1
	기 타	'96	2					1									1
		'96	3					2									1
		증감	+1					+1									
아 편	'96	23					19	1								3	
	'96	14					11									3	
	증감	-9					-8	-1									

〈표 10〉 외국인 마약사범 중 불법 체류자수의 점유비율

법령별 년별	각성제 단속법	대 마 단속법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아편법	합 계
'91	38/142 (26.8%)	7/85 (8.2%)	12/59 (20.3%)		57/303 (18.8%)
'92	117/276 (42.4%)	29/153 (19.0%)	32/114 (28.1%)	3/13 (23.1%)	181/556 (32.6%)
'93	124/288 (43.1%)	83/245 (33.9%)	60/142 (42.3%)	38/62 (61.3%)	305/737 (41.4%)
'94	176/338 (52.1%)	103/258 (39.9%)	57/130 (43.8%)	47/78 (60.3%)	383/804 (47.6%)
'95 1-6월	300/485 (61.9%)	80/178 (44.9%)	39/110 (35.5%)	31/52 (59.6%)	450/825 (54.5%)
	137/229 (59.8%)	41/97 (42.3%)	15/60 (25.0%)	16/23 (69.6%)	209/409 (51.1%)
'96 1-6월	237/314 (75.5%)	35/64 (54.7%)	17/32 (53.1%)	10/14 (71.4%)	299/424 (70.5%)

## 나. 특 징

1) 이란인, 필리핀인이 대다수

이란인이 전년동기에 비하여 61명(58.1%) 증가한 166명(39.2% 점유)이고 필리핀인이 145명(34.2%)으로 이 두나라 사람이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의 73.4%를 점하고 있다

2) 이란인에 의한 각성제사범 격증

이란인에 의한 각성제사범 검거 인원은 121명으로 이미 전년도 검거인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증가수는 전년동기에 비하여 77명(175.0%)으로서 급격히 늘고 있다

3) 외국인 입국시 대마수지 대량소지 밀수

1kg이상의 대량의 대마수지를 소지 밀수하는 사범은 9건 모두 입국하던 외국인이었으며 이로 인해 총 65.7kg(전체 압수량의 90.6%)을 압수하였고 전년동기에 비해 건수는 8건(47.1%) 감

소했으나 압수량은 3.6kg(5.8%) 증가하였다.

### 3. 매춘사범

#### 가. 개 요

'96 상반기의 외국인 매춘방지법 위반자 검거는 건수 154건, 인원 73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건수 17건(9.9%) 및 인원 57명(43.8%)이 각각 감소하였다.

#### 나. 특 징

##### 1) 街娼型이 주류를 형성

매춘방지법 위반의 양태별 검거 인원은 권유 등(이른바 街娼型 매춘사범)이 54명(74.0%)으로 제일 많고 이어 알선 등이 7명(9.6%), 매춘계약 6명(8.2%)의 순이며, 권유 등의 54명 중 30명(55.6%)이 태국인으로서 가창형 매춘사범의 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다

##### 2) 대만인에 의한 파견형 사범이 증가

대만인에 의한 매춘방지법위반의 검거양태는 알선 및 매춘계약(이른바 파견형 매춘사범)이 각각 43건 7명(전년동기 10건 2명), 36건 3명(전년 동기 11건 2명)으로 계 79건 10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58건(276.2%), 6명(150.0%)가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에 의한 전 파견형 매춘사범 중 건수에 있어서는 79.0%, 인원에는 76.9%를 점하고 있다

##### 3) 국적별로는 아시아인이 여전히 압도적 다수

태국, 대만 등 아시아지역 출신자가 59명으로 전체의 80.8%를 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태국인이 46건 36명으로 건수는 전체의 29.9%, 인원은 전체의 49.3%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만인은 84건 16명으로 건수는 전체의 54.5%, 인원은 전체의 21.9%를 점하고 이 두 나라가 건수는 84.4%, 인원은 7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이외에서는 콜롬비아인이 9건(구성비 5.8%) 9명(구성비 12.3%)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II. 외국인문제 대책추진 상황

년 월 일	경 찰 청	관계성청등	사 건
63. 5.13		• 외국인노동자관계 연락회 설치	
5.27		• 세계와 함께 살아가 는 일본(신경제계획) - 각의 결정	
6.17		• 제6차 고용대책 기본계획 - 각의 결정	
11.22			• 필리핀 여성에 관한 노동자 파견법 위반사건(茨城)
89. 1.15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와 사증면제 취득의 일시정지(외무성)	
1.25			• 파키스탄인 브로커에 의한 직업 안정법위반사건(楊玉)
3. 28		•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개정(불법취 업조장죄의 신설등) - 각의 결정	
7.26			• 콜롬비아 루트의 코카인 밀수입 사범 적발, 코카인 12kg 압수 (兵庫)
8.30			• 熊本縣牛深市魚貫崎港에 위장 난민 167명
12. 4			• 타이 루트의 헤로인 밀수입 사 범 적발, 헤로인 21.5kg 압수 (千葉)

년 월 일	경 찰 청	관계성청등	사 건
90. 2.13			• 페루선적화물선에 의한 코카인 23.1kg 압수(경시청)
5.15			• 콜롬비아 선적화물선에 의한 코카인 33.4kg 압수(경시청)
6. 1		•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불법취업 조장죄의 신설등)시행 - '89.12.15 법률 제79호	
6. 8	• 방법기획과에 외국인 노동자 대책관을 설치		
6. 9			• 필리핀인 브로커에게 불법취업 조장죄를 최초 적용(경시청)
6.29			• 파키스탄인에 의한 일본인 여성 살인사건(北海道)
10. 3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長崎)
'91. 2. 5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長崎)
4.11			• 이란인 남성에 의한 同國人 남성 살인사건(千葉)
4.23			• 중국인에 의한 경찰관 살인사건(경시청)
10.15 ~16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 외국인등록증 위조발견(오끼나와)
10.22			※한국인 여성 대상의 위장결혼 브로커 검거(6년간에 약300쌍을 알선)(大阪)

일본의 외국인 범죄 실태('96 상반기)와 대책의 개관

년 월 일	경 찰 청	관계성청등	사 건
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화대응, 국민생활 중시의 행정개혁에 관한 제2차 답신-임시 행정 개혁추진심의회</li> </ul>	
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鹽川 국가공안위원장 요요기공원 외국인 노숙 집합실태 시찰</li> </ul>	
'92.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취업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한 권고(총무청)</li> </ul>	
2. 4	경찰청 외국인문제 검토위원회의 설치		
2. 6	제1회 불법취업 외국인 대책 등 관계 국장 연락회의 (경찰, 법무, 노동)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인 집단밀항사건(경시청)</li> </ul>
4. 8	불법취업 등 외국인 노동자문제 지방협의회의 설치를 합의(경찰, 법무, 노동)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란과의 사증면제 취득의 일시정지(외무성)</li> </ul>	
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인 집단밀항사건(和歌山)</li> </ul>
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관리기본계획 (법무성)</li> </ul>	

년 월 일	경 찰 청	관계성청등	사 건
5.30			• 중국인에 의한 강도살인사건 (경시청)
6.26			• 스리랑카인에 의한 여대생 살인 • 사체유기사건(도치기)
6.30		• 신경제계획 - 각의 결정	
7. 9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靜岡)
7.24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態本)
7.30			• 콜롬비아인 코카인 밀매조직 (칼리카르텔)을 검거(神奈川)
8. 8			• 콜롬비아인들에 의한 코카인 밀수입사건(경시청)
8.11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長崎)
9. 4		• 鹽川대신 각의발언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조사가 필요'	
9.11		• 외국인 노동자문제 관계성청 연락회의 '불법체류자문제분과회'의 설치(內政審)	
9.15			• 대만마피아에 의한 권총사용 경찰관 살인미수사건(경시청)
9.17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長崎)
9.22			•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밀항사건(山口)
~26			
10.23			• 미국행 중국인 집단밀항선 '大友 1號'의 구조

일본의 외국인 범죄 실태('96 상반기)와 대책의 개관

년 월 일	경 찰 청	관계성청등	사 건
11.19	內閣內政심의실장에 대한 외국인 문제대책 강화의 요구		
11.20	외무성에 대해 집단 밀항사건의 재발 방지에 관하여 중국정부 및 북건성에 요청하도록 요구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三重)
11.26			• 일본어학교 관계자에 의한 불법 취업 조장사건(京都)
8.11			
12.26		• '93년도 취해야 할 조치를 중심으로 한 행정개혁의 실시 방침에 대해서-각의결정	
'93. 1.13	주요부현 등 외국인문제 담당과장 회의	• 內政審보고서(외국인 노동자 문제 관계성청 연락회의 불법체류자 문제 분과회)	• 이란인에 의한 강도살인미수사건(静岡)
1.25	외국인문제 담당장관관방심의관의 임명		
2. 1	경찰청 외국인문제 대책위원회의 설치		
2.18			※한국인그룹에 의한 소매치기 미수사건(경시청)
2.21			• 태국인그룹에 의한 살인사건(神奈川)
3.31			• 필리핀인에 의한 강도살인사건(千葉)

년 월 일	경 찰 청	관계성청등	사 건
4. 1		• 외국인 노동자 고용 상황보고제도의 발족 (노동성)	
4. 3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 (鹿兒島, 長崎, 熊本)
4. 5		• ‘기능실습제도에 관 한 출입국관리상의 치급에 관한 지침’ (법무성)	
4.18		• 노동대신 요요기 공 원 시찰	
4.20			• 스리랑카인 집단밀항사건 (長崎)
4.29	요요기공원 불법체류 운집 종합대책		
5.13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沖繩)
6. 1	불법체류 불법 취업 방 지활동 강화기간(6-7 월 경찰청)	• 외국인 노동자문제 계도월간(6월, 정부) • 말레이시아인에 대한 사증취득권장제도 개시	
6.11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北海道)
6.18			※ 현직市議가 관여한 한국인여성 위장결혼사건(岡山)
6.27			• 페루인 동료에 의한 살인사건 (愛知)
8.19	외국인 문제백서 (’93 상반기) 발표		

일본의 외국인 범죄 실태('96 상반기)와 대책의 개관

년 월 일	경 찰 청	관계성청등	사 건
9. 2			• 스리랑카인에 의한 강간 살인미수사건(滋賀)
9.21	법무성에 대한 印 등 위조방지 대책강화 신청		
9.27			• 중학교사에 의한 불법취업 알선사건(福岡)
10. 8			• 인도인에 의한 우체국대상 강도살인사건(大阪)
10.18		• 상륙허가 印 등의 양식의 개정(법무성 입관국)	
10.22 ~11. 3			• 大村難民 一時 수용센타의 집단난투 및 도주사건(長崎)
11.16	페루와의 사증면제결정 일시정지에 관해 외무성에 요구		
11.22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和歌山)
11.23			• 한국인 그룹에 의한 폭력소매치기사건(경시청)
11.26			• 중국인 사이의 살인미수사건(경시청)
12.17		• 동일본 입국관리센타 개설	
'94. 1. 5			• 태국인 집단밀항사건(熊本)
1. 7			• 중국인 마피아들에 의한 코카인 밀매사건(神奈川)

해외 정책 정보

년 월 일	경 찰 청	관계성청등	사 건
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지나 난민 국제회의 운영위원회 (제네바)에서 스크리닝제도의 폐지를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조 成田 관세교통입국증을 이용한 불법입국사건(千葉)</li> </ul>
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인 집단밀항사건(경시청)</li> </ul>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크리닝제도의 폐지를 각의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마약범죄조직에 의한 대마수지 밀수입사건(愛知, 千葉)</li> </ul>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콜롬비아인에 의한 대량의 코카인 밀수입사건(경시청)</li> </ul>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인 집단밀항사건(知歌山)</li> </ul>
3.31	외국인문제백서 ('93년) 발표		
4.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국인에 의한 살인사건(茨城)</li> </ul>
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란인에 의한 강도사건(도치기)</li> </ul>
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남아시아계 다국적 마약밀수 밀매조직에 의한 헤로인 밀수사건(경시청)</li> </ul>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남인 집단밀항사건(長崎)</li> </ul>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인 집단밀항사건(島根)</li> </ul>
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인 집단밀항사건(福岡)</li> </ul>
6. 1	불법체류·불법취업 방지활동 강화기간(6-7월, 경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노동자문제 계도월간</li> </ul>	
6. 2	'불법취업 외국인대책 등 협의회'에 의한 경제단체에 대한 협조요청 (경찰, 법무, 노동)		

일본의 외국인 범죄 실태('96 상반기)와 대책의 개관

년 월 일	경 찰 청	관계성청등	사 건
6. 9			• 日本系 브라질인에 관한 노동자 과건법 위반사건(大阪)
6.14	경찰청, 법무성, 노동성 의 외무성에 대한 요구 (사증발급의 엄격화 등 4항목)		
7. 1	국제부 발족에 따라 경 찰청 외국인문제대책위 원회 사무국을 국제 제 1과에 이관		
7.15			• 중국인그룹에 의한 인질대금 요 구목적 誘拐사건(경시청)
8. 1	외국인문제의 현상과 대책('94 상반기) 발표		
8.10			• 중국인그룹에 의한 인질대금 요 구목적 誘拐사건(경시청)
8.12		• 집단 불법입국사범의 대처방침에 대해 합 의(경찰청, 법무성, 해상보안청)	
9.12			•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에 의한 살 인사건(경시청)
9.16			• 중국인에 의한 살인사건 (경시청)
9.26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靜岡)
10. 2			• 중국인들에 의한 대량의 각성제 소지사건(경시청)
11.16			• 나이지리아인에 의한 짐바브에 루트의 대량 건조대마 밀수사건 (경시청)

해외 정책 정보

년 월 일	경 찰 청	관계성청등	사 건
12.26			• 페루인관련 인재과견회사에 의한 노동자과견법 위반사건 (山形)
'95. 3. 8			• 日本系 브라질인 관련 노동자 과견법 위반사건(大阪)
3.10			• 중국인들에 의한 인질대금 요구목적의 유괴사건(경시청)
4.13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愛知)
4.15			• 이란인 마약밀매그룹 검거금 (愛知)
4.22			• 콜롬비아인들의 코카인 밀수입사건(千葉)
4.28			• 베트남인 집단밀항사건(長崎)
4.30	외국인문제의 현황과 대책('94) 발표		•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에 의한 살인사건(경시청)
5. 6		• 미얀마인 집단밀항사건(福岡)	
5.12			• 태국인에 의한 살인 및 거주 건조물 등 방화사건(千葉)
5.16			• 파키스탄인 등 집단밀항사건(福岡)
5.22			• 필리핀인 여성관련 불법취업 조장사건(秋田)
5.23			• 暴竊團에 의한 광역집단 절도사건(福岡)
5.30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長崎)
5.31			• 필리핀인 집단밀항사건(北海道)

일본의 외국인 범죄 실태('96 상반기)와 대책의 개관

년 월 일	경 찰 청	관계성청등	사 건
6. 1	불법체류 불법취업방지를 위한 활동월간(6월)	• 외국인노동자문제 계도월간(6월, 정부)	
6. 4			※ 한국인에 의한 외국인등록명서 위조사건(大阪)
6. 7	경제단체에 대한 합동 설명회(경찰, 법무, 노동)		
6.13	경찰청, 법무성, 노동성이 외무성에 요구(페루와의 사증면제협정의 재검토 등)		
6.24			• 태국인 관련 노동자과건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사건(新潟)
7.15		• 페루인에 대한 사증 취득권장제도 개시	
8.22			• 콜롬비아인에 의한 코카인 밀수 입사건(大阪)
9. 1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長崎)
9. 3			• 중국인에 의한 고주파 발신기 사용절도사건(北海道)
9. 5			• 방글라데시인 등 집단밀항사건(山口)
9. 7	외국인문제의 현상과 대책('95 상반기) 발표		
9.23			• 중국인 집단밀항사건(靜岡)
10.19			• 폴란드인에 의한 대마수지 밀수 입사건(千葉)
10.26			• 중국인에 의한 詐欺盜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 사기사건(廣道)

년 월 일	경 찰 청	관계성청등	사 건
10.31			• 태국인 관련 불법취업조장사건 (京都)
11.15			• 태국인 여성관련 매춘사건 (愛知)
11.18			• 싱가포르인에 의한 아편 밀수입사건(愛知)
11.20			• 러시아 및 필리핀 여성 관련 불법취업조장사건(北海道)
12. 8			• 인도네시아인 관련 불법취업 조장사건(靜岡)
12.10			• 필리핀인 여성 관련 불법취업 조장사건(靜岡)
12.15			• 브라질인에 의한 공기총 사용 우체국 강도사건(茨城)
12.26			• 방글라데시인 등 집단밀항사건 (長崎)
'96. 2. 6			• 예능프로덕션에 의한 캐나다인 관련 불법취업조장 및 노동자 파견법 위반사건(郡馬)
2. 6 ~			• 이란인들에 의한 각성제 대마 등 소지사건(愛知)
2. 7			• 山口縣光市の 집단밀항사건 (山口)
			• 오키나와縣 烏島沖집단밀항사건 (오키나와)
2.10			• 이란인들에 의한 각성제·대마 수지 등 소지사건(山口)
3. 4			• 중국인 남성에 의한 일본인 동료 살인사건(京都)

년 월 일	경 찰 청	관계성청등	사 건
3.14			• 브라질인 브로커에 의한 불법취업조장 및 직업안정법 위반사건(도치기)
3.27			• 福岡縣 博多港 집단밀항사건(福岡)
3.29	외국인문제의 현상과 대책 ('95)발표		
3.30			• 음식점의 태국인여성 관련 매춘사건(靜岡)
4.21			• 오키나와縣 贖谷村 집단밀항사건(오키나와)
4.22			• 월남인그룹에 의한 절도 및 盜品 등 유상양도사건
5. 8			• 다국적 강도그룹에 의한 귀금속, 양주 대상 광역 점포 털이사건(愛知, 三重, 阜, 宮城, 檜玉)
5.10			• 중국인그룹에 의한 흉기 강도 致傷사건(경시청) • 天白川の 살인 사체유기사건(愛知)
5.14			• 愛知縣 渥美郡 赤羽港 집단 밀항사건(愛知)
5.27			※한국인 그룹에 의한 폭력 소매치기사건(경시청) • 비밀매춘클럽의 콜럼비아인 여성관련 매춘사건(경시청)

년 월 일	경 찰 청	관계성청등	사 건
5.30			• 독일인에 의한 대량 마약수지 밀수입사건(千葉)
6. 1	불법체류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활동 월간(6월)	• 외국인 노동자문제 제도월간(6월,정부)	
6. 6	경제단체에 대한 합동 설명회 (경찰, 법무, 노동)		
6.11			• 미얀마인 관련 불법취업조장사건(宮城)
6.20			• 스트릿극장의 콜롬비아인 여성 관련 공연외설 및 매춘사건(靑森)

# 세계주요국가의 범죄<sup>1)</sup>

## I. 서 론

사회나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간접적으로 해치거나 위협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를 알아보는 방법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손쉬운 방법중의 하나는 그 사회의 범죄발생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통계자료(사회지표 및 범죄통계)가 정비되어 있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범죄분석을 통하여 사회현상과 범죄발생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범죄통계치에 대해서는, 교통범죄를 제외한 주요 범죄를 대상으로 하였고, 경찰당국이 인지한 「발생건수」 및 「발생률(인구 10만명당 인지건수)」에 의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주요 범죄로서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살인」, 성범죄의 전형인 「강간」, 또한 대표적 일반범죄인 「절도」에 주목하여 각 범죄별 사회현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범죄발생 현상의 변화를 세계 주요국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봄으로써 해서, 향후 우리 사회의 소득수준 발전에 따른 미래의 범죄발생 현상을 미리 예측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범죄통계를 이용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국에 있어서 범죄로 정의되는 범주와 범죄구성요건이 다르고 통계기법도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 ② 범죄의 총수는 그밖의 특정요인이 없어도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어느 해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범죄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감소한 것으로

1) 본고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소득 1만불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대응」에서 발췌수록한 것이다.

나타날 수도 있다.

④ 범죄가 발생했다고 통보된 건수는 경찰이 인지하고 있는 범죄 발생건수보다 훨씬 많다. 범죄학자에 의하면 전체범죄의 2/3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⑤ 모든 범죄가 보고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모든 범죄가 같은 비율로 보고되지도 않는다. 즉 약물 복용이나 매춘과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에 비한다면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는 거의 대부분이 신고된다.

⑥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과 신고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유아 학대나 아내 구타와 같은 가정내 폭력은 20~30년 전과 달리 최근에서야 신고되고 있어서 폭력범죄 건수로 가산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강간도 예전에 비해 신고가 증가되는 경향이다.

⑦ 그밖에 범죄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전화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편리성의 향상과 경찰관의 증원 그리고 경찰의 노력을 들 수 있다.

⑧ 범죄 인지건수가 대폭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일반 가정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손해보험의 규정상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⑨ 텔레비전에 의한 범죄 보도는 공포와 비참함을 공유하는 100만명의 유사체험희생자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범죄가 적은 지역에서의 여론조사에서도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높게 나타난다.

범죄통계를 이용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상과 같다. 그러나 각 국의 범죄 동향의 현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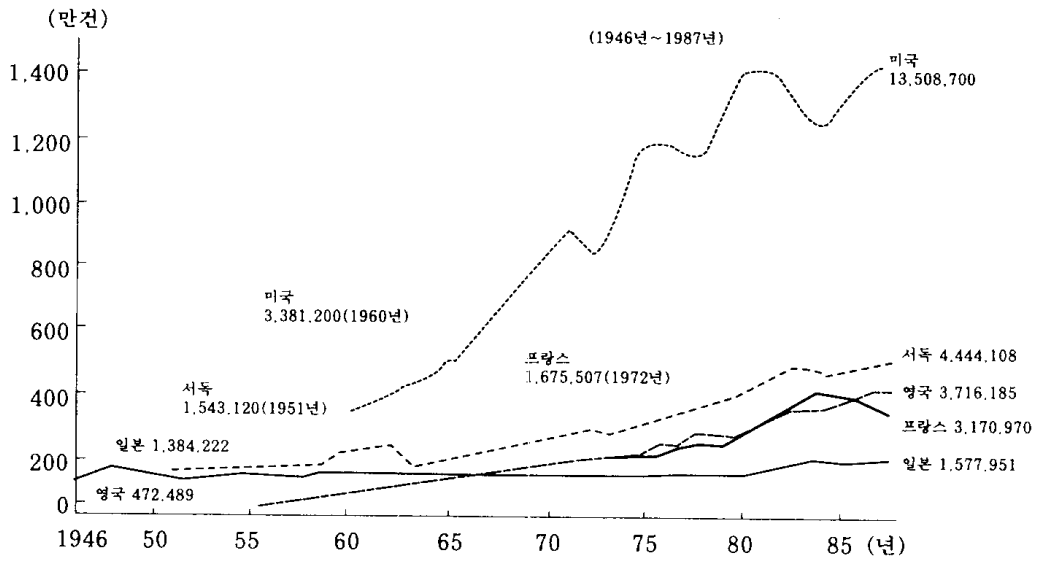
## II. 주요국의 범죄동향

〈그림 1〉은 각 국의 주요범죄의 인지건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차대전 직후에는 패전으로 인해 혼란이 극심했던 서독과 일본이 주요범죄 인지건수 합계에 있어서 영국의 수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 영국, 서독에서의 범죄건수가 크게 증가된다. 1970년대 이후는 프랑스를 포함하여 구미 4개국에서 대폭 늘어난다. 일본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 감소 내지 정체되는 상태였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는 증가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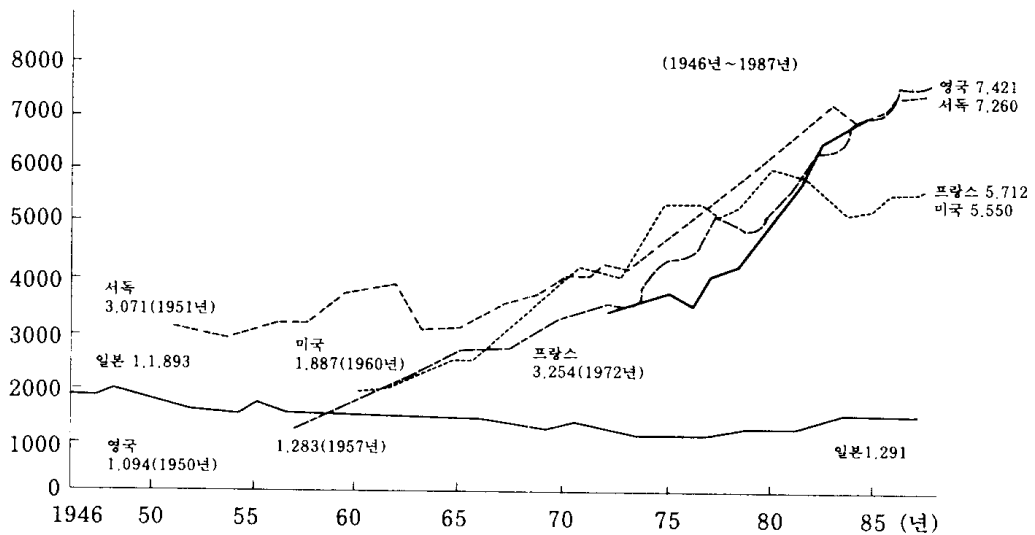
1972년을 100으로 하는 지수를 가지고 1987년의 인지건수 합계를 보면, 영국은 220, 프랑스는 189, 서독은 173, 미국은 164인데 비해, 일본은 129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2〉는 각국의 주요 범죄합계 발생률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이 거의 감소 혹은 정체상태에 있는 데 비해, 구미 각국의 경우 더 높게 상승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1〉 주요 범죄의 인지건수 추이



〈그림 2〉 주요 범죄의 발생률 추이



다음에서는 각국별 범죄 통계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기도 한다.

## 1. 일본의 범죄 동향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공업화, 도시화 등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동을 경험한 나라가 적지 않다. 구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동을 경험하였는데, 그 대다수 나라들은 그러한 변동과 동시에 나타나는 폭력범죄 중심의 범죄 다발현상에 골치를 썩여야 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급격한 경제 사회의 변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혼란기와 그에 이어진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가 감소 내지 완만한 증가에 머물러, 주요 범죄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구미 선진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26년에 약 71만건이었던 범죄건수(교통범죄 제외)는 1934년에는 155만건으로 피크를 기록한 후, 감소로 전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戰前의 최저치가 되고 戰後는 점증하여 1948년에는 약 160만건에 달했다. 그 후는 비슷하거나 감소 경향이 지속되어 1973년에는 119만건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1975년 이래로 다시 증가세가 지속되어 1993년에는 180만건을 기록했다.

1934년의 수치가 높은 것은 당시의 경제적 궁핍과 사회 불안으로 인해 재산범 외에 모든 범죄가 증가한 경과이다. 1948년의 피크는 전후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곤궁 등에서 기인하는 강도, 절도, 사기 등의 급증으로 인한 것이다. 1993년의 최고치는 주로 수퍼마켓이나 방치 자전거로 인해 범죄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경미한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이 증가한 것이고, 기타 살인이나 강도, 방화, 상해, 강간 등의 건수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범죄 종류별로 보면 전전과 전후를 통틀어 건수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은 바화 失火, 살인 등이고, 전후에 감소한 범죄는 도박·도기꾸지(복권의 일종), 탈취, 유괴 등이다. 한편 전후에 증가한 범죄는 절도, 공갈, 강도, 폭행, 상해, 강간, 강제외설 등이다.

## 2. 미국의 범죄 동향

과거 30~40년 동안 미국의 범죄는 총수와 범죄발생률(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이 모두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폭력범죄는 그 총수 및 발생률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FBI의 「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s)」에 따르면, 1973년에 876,000건이었던 폭력범죄 건수가 1980년에는 13억 4천만건,

1992년에는 19억 3천만건으로 늘어났다. 동시에 인구 10만명당 폭력범죄 발생률도 1973년에는 417이었던 것이 1980년에는 597, 1992년에는 758로 높아져 82%나 상승했다. 1960년 이래 폭력범죄에서 기인한 모든 사건건수는 600% 증가해 왔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살인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22분마다 1건의 비율로 살인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미국의 살인률은 독일의 2.5배, 영국의 약 5배, 일본의 10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살인율은 1987년을 피크로 최근에는 낮아지고 있다. 1994년의 살인 건수는 23,730건으로 1993년의 25,470건에 비해 7% 떨어졌다. 살인 건수가 3년째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어떤 범죄학자는 이러한 범죄의 증가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며, 6~7개 도시에서의 법과 질서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범죄희생자가 10명당 1명 이상인 수도 워싱턴에서의 폭력범죄 발생률은 2,453으로 전국 평균의 3배 이상이며 두번째로 폭력범죄가 많은 플로리다 보다도 2배나 된다. 정부관계자는 범죄다발지역에 경찰을 증원하는 조치가 살인을 감소시키는 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수도 워싱턴에서는 1994년에 살인이 약 12% 감소하였다.

미국의 폭력범죄는 인종문제도 반영하고 있다. 1968년부터 1984년에 걸쳐 백인의 살인에 의한 피해자는 10%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증가를 고려하면 약간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흑인간의 살인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인구의 12%를 점하는 흑인은 어느 때는 兇者이고 또 어느 때는 사건의 50% 이상의 희생자이기도 하다 1992년에는 백인 희생자와 백인 가해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범죄는 5,967건, 백인 희생자와 흑인 가해자의 조합은 1,216건, 흑인 희생자와 백인 가해자의 조합은 392건, 흑인 희생자와 흑인 가해자와 조합은 6,600건이다. 1992년에 발생한 살인의 35%는 미해결인 상태였는데, 미해결 범죄가 모두 백인에 의한 것이라 치더라도 흑인 관련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흑인 사회가 범죄의 양면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3. 유럽의 범죄 동향

유럽의 범죄 발생율, 특히 폭력범죄 발생률은 미국에 비해서 낮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가. 영 국

1994년 영국에서 경찰에 신고된 범죄 총수는 530만 건이다.(이에 비해 미국은 1992년에 3,

480만 건이었다.) 이는 1992년과 1993년에 계속 5% 정도씩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동향을 보면, 1950년에는 1,000건을 약간 넘었던 범죄 발생률이 1994년에 약 10,000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영국에서 신고된 범죄의 대부분은 재산범이다.(93%) 재산범의 범주에는 강도와 절도, 사기, 위조, 기물파손, 방화가 포함된다.

폭력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1994년에 331,700건의 폭력범죄가 경찰에 신고되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늘어난 규모이다.(1984년은 159,300건) 신고된 강간건수율도 증가하고 있다.

1994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729건의 살인이 보고되었고 이는 1993년에 비해 8% 증가한 것이다. 살인은 1940년대 후반의 300~400건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700건을 넘어섰지만, 이는 흉악범죄의 증가를 밀도는 것이다.

### 나. 독일

독일에서는 동서독일의 통일을 계기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1991년에는 19% 이상, 1992년에는 18%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1989년에서 1993년 사이에 총 범죄건수는 54% 증가하였지만 1994년에는 5년만에 처음으로 3.5% 감소로 돌아섰다. 폭력범죄는 여전히 높다. 이 5년 동안 독일에서 살인은 약 80%, 강간은 60%, 강도는 60%, 약물사건은 30% 각각 증가하였다.

독일에서의 범죄는 서쪽지역에서는 낮고, 동쪽지역에서는 높으며, 특히 폴란드와의 국경 근처에서 범죄가 다발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통계수치는 1989년까지는 구독일의 통계치이며, 그 이후의 수치는 통일 독일의 것이다. 그로 인하여 1991년 이후의 살인율 및 절도율이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다. 프랑스

프랑스의 범죄는 1950년부터 보면 6배로 증가했다. 1950년부터 1962년까지의 증가율은 완만했지만(연 2.1%), 1962년부터 1984년까지의 기간에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1984년부터 1988년 사이에 범죄발생률은 급격히 낮아졌다가 그후 다시 급격히 증가로 돌아서서 연 4.2%의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1989년부터 1993년 사이에 프랑스의 범죄는 약 19% 증가했다. 프랑스에서는 전 범죄의 4%만이 대인(對人)범죄이다. 살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도난(1994년의 자동차 도난은 1950년의 147배)과 약물의 불법사용 및 판매, 그리고 경범죄이다.

#### 라. 기타 유럽국가

기타 유럽국가들도 1989년부터 1993년까지의 5년간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스에서는 전 범죄가 25%, 룩셈부르크에서는 20%, 포르투갈에서는 10% 각각 증가했다. 덴마크는 안정적이어서 1.5% 증가에 그쳤고, 스페인에서는 6%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폭력범죄는 1987년부터 1993년 사이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살인은 나라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1989년에서 1993년 사이에 살인은 룩셈부르크에서는 40%, 이탈리아에서는 16%, 아일랜드에서는 8%, 그리스에서는 3%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는 29%, 벨기에에서 17%, 폴란드에서 11%, 덴마크와 포르투갈에서 5%,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4% 각각 살인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유럽에서는 살인의 비율에 있어서 복잡한 변화가 보여지지만, 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에 의해 범죄 전체가 증가하고 있다. 동유럽과 구소련에서는 신뢰할 만한 장기 통계가 없지만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이래로 이들 나라에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확실히 주고 있다.

#### 4. 살인 발생률의 동향

살인 발생률의 동향 <그림 3>을 보면 미국의 수치가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1980년대 후반의 영국의 수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끄는 반면, 일본에서는 그 수치가 착실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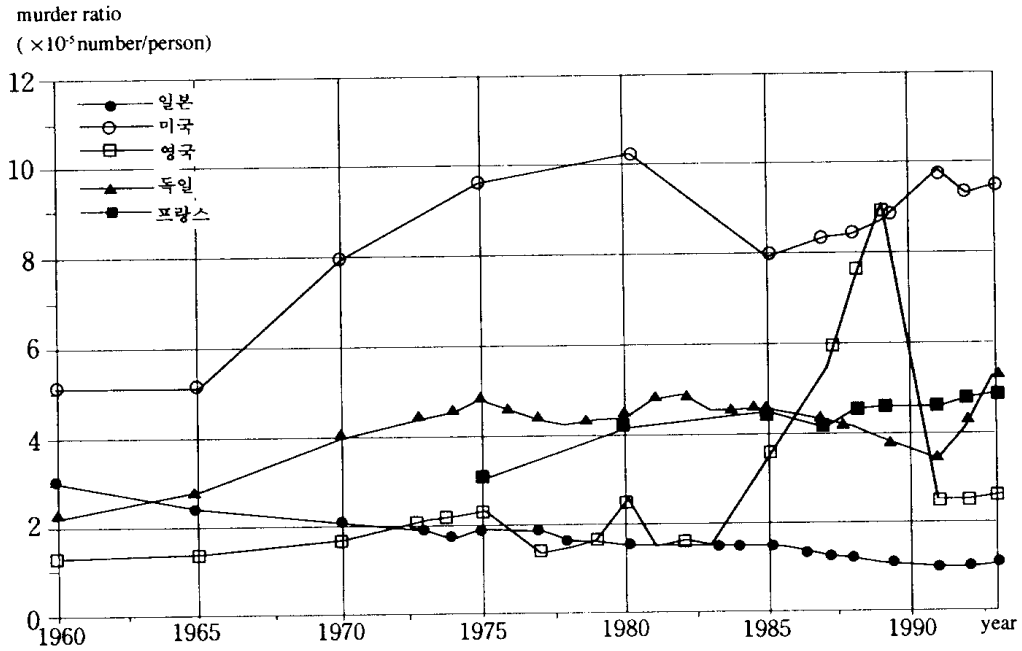
#### 5. 절도 발생률의 동향

절도 발생률의 동향 <그림 4>을 보면, 미국의 수치가 1965년부터 1980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것과 1970년대 중기부터의 영국, 독일의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 눈길을 끄는 한편, 일본의 절도 발생률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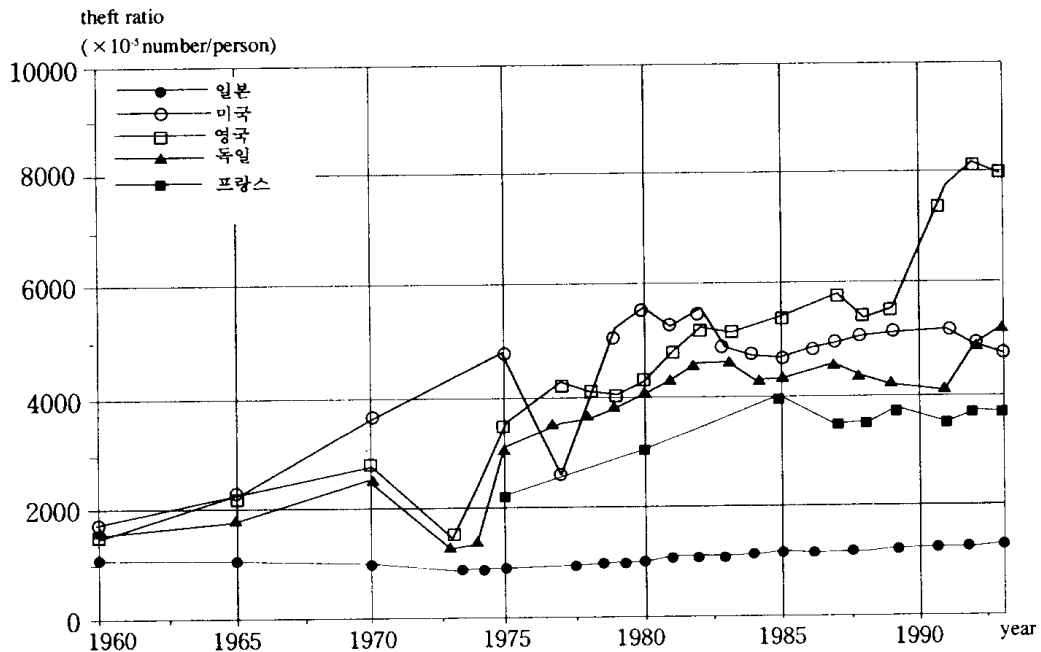
#### 6. 강간 발생률의 동향

강간발생률의 동향 <그림 5>을 보면 미국의 수치가 1965년부터 1980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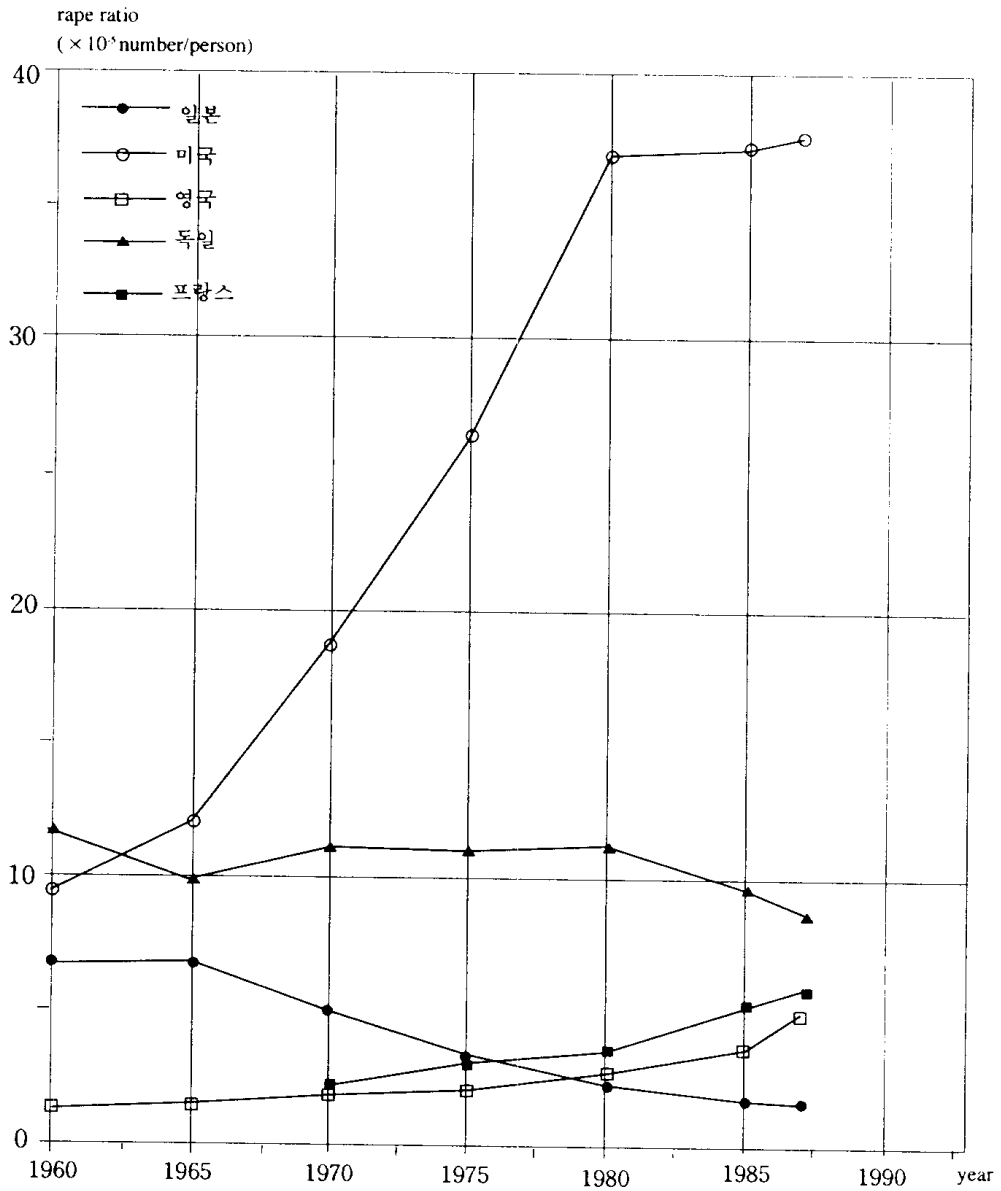
〈그림 3〉 살인 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의 추이



〈그림 4〉 절도 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의 추이



〈그림 5〉 강간 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의 추이



# 영국의 경찰 · 학교 연계제도에 관한 소고 (Police Schools Liaison Scheme)

—에이본 앤드 섬머셋 경찰청을 중심으로—  
(Avon and Somerset Constabulary)

박 기 남  
(경찰청 외사과)

## I. 글 머리에

영국 경찰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 43개, 스코틀랜드에 8개, 북아일랜드에 1개 등 총 52개의 독립 경찰청(Constabulary)들에 의해 치안 유지가 되고 있다. 여기서 ‘독립’이란 첫째, 경찰권의 행사가 정치권의 영향력으로 부터 격리되어 있으며, 둘째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며, 셋째 52개의 경찰청들이 서로 상하관계를 갖는 것이 아닌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런던 경시청의 장은 런던 경시청의 최고 책임자 일 뿐, 영국 경찰 전체의 운영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해서, 영국경찰이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의 전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경찰의 운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기본적인 자치경찰의 모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극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 할 만하다.

첫째, 경찰예산의 구성을 보면, 51%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49%는 지방재원에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각 경찰청은 중앙정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치안 주무부서인 내무장관(Home Secretary. 영국에는 법무부가 따로 편제되어 있지 않음)은 주로 전직 경찰청장 출신으로 이루어진 ‘왕명 경찰 감사관(Her Majesty’s Inspectors of Constabulary)’으로 하여금 각 경

찰청의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때는 중앙정부예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둘째, 내무장관은 공문(Home Office Circular)에 의해 경찰 정책에 관하여 각 경찰청에 조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언 사항들은 효율성 감사시 좋은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광역성 범죄수사를 위한 ‘권역 범죄수사대(Regional Crime Squad)’, 범죄정보의 전산화 및 공동사용을 위한 ‘National Computer Centre’, ‘National DNA Data Bank’, 다중범죄 진압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National Reporting Centre’ 등의 출현들도 지방자치 경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영국의 경찰·학교 연계제도(Police Schools Liaison Scheme)를 살펴 보도록 하자. 경찰·학교 연계제도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찰관이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건전한시민의식의 함양’과 ‘동의에의한 경찰활동’[Policing by consent]의 철학을 가르치고 범죄예방 등에 대한 조언을 하며, 학원폭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린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찰활동을 뜻한다.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첫번째 부분은 경찰·학교연계제도의 찬성·반대의 일반론을, 그리고 두번째 부분은 그 효과성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II. 찬·반 양론의 역사적 고찰

### 1. 발전적 측면

1829년 로버트 필경(Sir Robert Peel)에 의해 창설된 근대 영국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제압하는 등의 통상적 경찰임무외에도, 오늘날 영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다음과 같은 영국경찰 특유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 경찰은 누구든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하며, 언제든지 비상시에는 위급성의 경중을 떠나 구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They have by long tradition a duty to be friend anyone who needs their help, and they may at any time be called upon to cope with minor or major emergencies.”

경찰·학교 연계제도의 연원은 1951년 리버풀 경찰에 의해 도입된 경찰·청소년 연계제도 [Police Juvenile Liaison Scheme]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64년 당시의 리버풀경찰청장은

그 제도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평화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특히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경찰서비스는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을 돕는데도 커다란 역할을 하여야 한다. .... 본질적으로 어린이들은 악하지 않으나 부모들의 정신적, 도덕적 본보기의 결핍과 성장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확고함의 부재로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의무감의 자각으로 1951년 리버풀 시 경찰은 경찰·청소년 연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리버풀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의 급격한 감소와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낮은 범죄율증가로 인하여 리버풀 경찰의 새로운 시도는 굉장한 성공으로 평가 받았다.

초창기 경찰·청소년 연계제도가 현대적 경찰·학교 연계제도로 탈바꿈하고 조직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80년대 초반에 영국의 곳곳에서 준동했던 흑인들의 폭동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1981년 4월에 시작되어 근 4개월간이나 계속되었던 브릭스톤 폭동(Brixton Riots)은 정치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정부는 스카만 경(Lord Scarman)으로 하여금 그 진상을 조사하고 개선안을 보고토록 하였다. 스카만 보고서의 대부분은 흑인 지역사회와 경찰간의 긴장관계를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부수적으로 경찰의 학교내 활동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경찰의 학교내 활동 -그룹 토의, 경찰관련 수업, 교통안전 강의 등을 통한-은 이미 광범위해졌다. 본인은(Lord Scarman)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러한 경찰의 활동을 환영하고 장려하기를 바란다. 명백히 경찰의 학교내 활동에는 제한요소들이 있다. 예를들면, 경찰이 단지 어린이들을 심문하기 위해 학교구내에 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질서 있는 사회의 기본원리를 교육시킴에 있어서 경찰의 조력은 커다란 힘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속히 변해가고 그 긴장도가 증폭되어가는 사회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을 정부가 일해 나가고, 법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회적 책무와 시민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스카만 보고서의 영향으로 1983년 경에는 경찰·학교 연계제도는 영국내 타지역 경찰까지 보급되었으며, 같은 언어권인 미국, 영연방 국가는 물론 유럽 대륙, 태국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 시기부터는 경찰·학교 연계제도에 관한 이론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갔으며 1983년에 발행된 교육부의 보고서는 그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 ① 어린이들로 하여금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케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일깨우는데 기여한다.

- ② 학교, 청소년 회관 등 교육기관내의 범죄예방을 촉진한다.
- ③ 경찰 및 그 관련기관인 법원, 교도소 등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촉진 시킨다.
- ④ 어린이들에게 도로나 가정내 또는 놀이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예를들면 교통사고, 화재, 유괴등— 으로부터 자신 또는 친구들 을 보호할 수 있는 기법 등을 가르친다.

이렇듯 경찰의 청소년 보호 및 선도책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경찰·학교 연계제도는 1986년의 교육법 개정으로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즉, 동법은 ‘학생들을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추며 법을 존중하도록 교육시킬 의무가 학교에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 이사회와 학교장의 하여야 할 일들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학교이사회와 학교장은 커리큘럼을 구성함에 있어,

- ① 경찰의 학교내의 활동이 그들의 책임과 관련됨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 ② 학교와 지역사회간 특히 경찰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학교 이사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 지를 서술하여야 한다.

나아가 1986년 교육법의 개정법인 1988년의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은 ‘학교 교과과정은 균형이 잡히고 풍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과과정이 다음의 요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학생의 정신적, 도덕적, 문화적, 신체적 발전을 도모하고
- ② 학생들로 하여금 성인 생활의 책임감, 간접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인의 인터뷰 도중에 만났던 한 학교연계 경찰관은 교육법이 경찰·학교 연계제도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 사회적 도덕교육(Personal Social Moral Education-PSME)이 국가 교과과정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장학관들에 의해 감사를 받을 때는 PSME는 중요한 점검대상이 됩니다. 학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 몇 몇 학교들은 ‘우리들은 PSME 를 실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찰관들이 와서 애들을 가르치니까요’라고 답변하곤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8년 3월 교육부의 ‘학교 훈육 실태에 관한 조사위원회’(The Committee of Enquiry into Discipline in Schools)가 펴낸 보고서는 경찰·학교 연계제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확대 보급되도록 학교장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 2. 비판적 측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1년 리버풀 경찰에서 시도된 경찰·학교 연계제도가 긍정적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고 확산된 것만은 아니었다. 어떠한 문제점들을 노정시켰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979년 블레어 피치(Blair Peach)라는 백인 교사가 런던의 할렘가인 핵크니(Hackney) 지역에서 백인우월주의 반대데모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핵크니 교사연합(Hackney Teachers' Association)으로 하여금 '경찰과의 비협조'라는 노선을 취하도록 만들었다. 동연합에 의해 출판된 팜플렛에는 경찰에 대한 비난이 가득하다.

“현 사회에서 경찰이 다른 어떠한 그룹보다 학교에서 5인조 축구, 디스코, 도로안전, 법 또는 심지어 ‘낮선 사람 안 따라가기’ 등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내 경찰 활동이 커리큘럼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데, 그들의 진정한 숨은 동기는 ‘통제와 정보수집’에 있다. 경찰의 인종차별주의가 확인된 만큼, 경찰의 학교에의 접근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경찰이 학교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

1982년 ‘인종과 교육문제(Issues in Race and Education)’라는 잡지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이 사용하는 교재 등을 조사한 후 경찰·학교 연계제도에 대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경찰의 학교내 활동에 대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 ① 법집행 : 특정범죄 또는 용의자에 관한 증거모집, 증인청취, 탐문 등의 형사활동
- ② 정보활동: 특정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실태에 관한 일반 자료수집.
- ② 아동교육: 도로안전 교육, 유괴예방교육등.
- ④ 홍보활동: 어린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경찰의 이미지를 개선.

심지어 1983년 ‘교육 자문 센터(Advisory Centre for Education)’의 보고서는 학교내 경찰활동의 잘못된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경찰·학교 연계제도를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고도의 감시활동(High profile surveillance operation)’으로 혹평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은 1985년 전국교사연맹 런던내권지부(Inner London branch)에 의해 주도된 ‘학교에서의 경찰 추방대회(The police out of schools campaign)’로 이어졌다. 학교내 활동으로 경찰이 학교, 학생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하면서, ‘어린이가 부모의 부재중 학교에서 사복형사들에 의해 체포되거나, 경찰에 의한 인종차별적 언어사용’ 등의 인권침해와 결부되는 사례들을 적시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의 학교내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겨나, 콕스 남작(Baroness Cox)은 국회 상원에서 ‘22개 학교가 경찰의 교내활동에 대한 위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이는 자신들과 경찰의 역할구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안되었던 교사들이 너무 많았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3. 결 론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경찰의 학교내 활동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대의견들이 1988년 이전에 제기되었다는 점과 1988년의 교육개혁법의 제정으로 영국정부가 간접적이거나 경찰·학교 연계제도를 장려하려 했다는 점에서, 경찰·학교연계제도를 둘러싼 찬·반 양론의 오랜 싸움에서 경찰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찰·학교연계제도의 체계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많은 경찰 학자들로 하여금 그 효과성의 계량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 Ⅲ. 효과성에 관한 논의들

### 1. 골디스 경정(Superintendent Goldies)의 모델

그레이트 맨체스터(Great Manchester) 경찰의 골디스 경정은 경찰참모대학(Bramshill Police Staff Police College) 고급간부과정에서 행한 발표에서 성공적인 경찰·학교연계제도를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경찰의 학교활동에 개입하기에 앞서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교육계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다양하고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③ 사춘기인 중학생(Secondary School)기에 기존 질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항이 시작되며, 특히 경찰조직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기 쉬우므로 이러한 학년군을 집중공략 하여야 한다.
- ④ 경찰·학교 연계경찰관은 명석, 신중 하고 지식이 높으며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는 학생, 교육관계자,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내의 회의감이나 반감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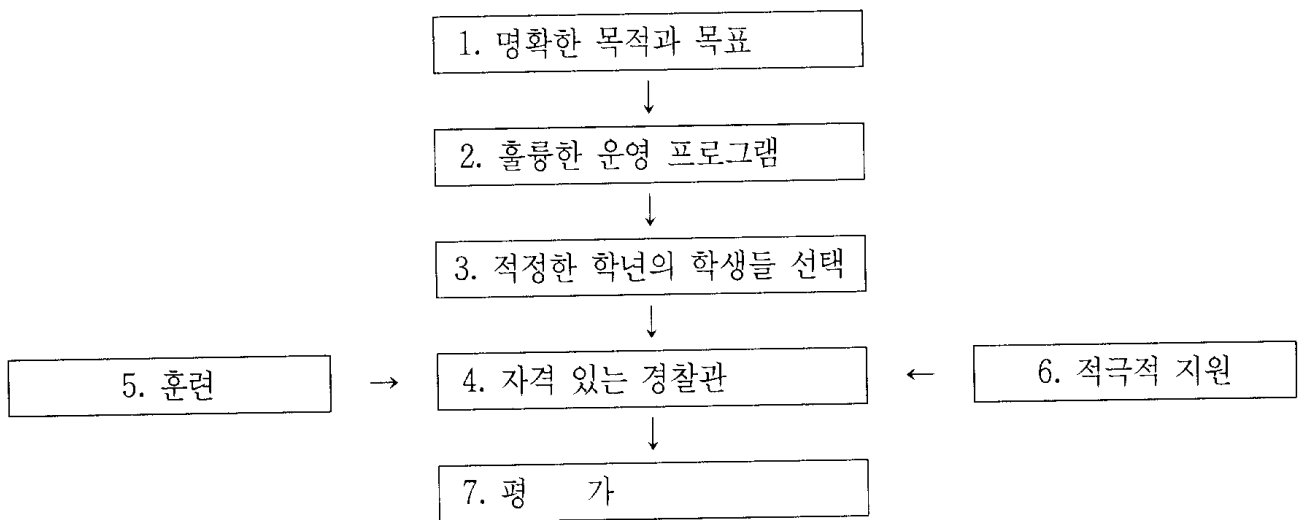
⑤ 경찰·학교 연계경찰관은 적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교육관련 전문가로 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

⑥ 경찰·학교 연계경찰관들에 대한 지원—예를 들어 각종 교재, 인사고과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⑦ 경찰·학교 연계제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평가에는 각 관련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골디스 경정의 모델이 각 경찰청들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이유는, 앞서 전술한 지방자치 경찰의 특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43개 경찰청 중의 하나인 ‘에이본 앤드 섬머스 경찰청(Avon and Somerset Constabulary)’지역에서 실시되었던 경찰·학교 연계제도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실험들을 살펴 보고자한다.

경찰·학교 연계제도를 위한 전략



2. 홉킨스, 휴스턴, 한씨의 공동연구

1988년 2월 부터 1년 동안 홉킨스 등의 학자들은 내무부의 의뢰로 에이본 앤드 섬머셀 경찰청에서 경찰·학교 연계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당시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16명의 전종 경찰관들에 의해 경찰·학교운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도 에이본 앤드 섬머셀 경찰청 본부에 있었다. 조사는 경찰·학교 연계제도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학생 1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기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중점 평가 대상은 ‘학생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학교 연계제도에 참가한 학생들은 경험, 관찰, 토의 등을 통해, 학교 연계경찰관들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질 것이며 이는 곧 그들이 가질 수도 있는 경찰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학생들은 전체 경찰관들 보다는 학교연계 경찰관들에 대해서 훨씬 높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
- ②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연계 경찰관들을 일반경찰의 전형으로 생각하는 데는 실패함으로써 그 효과가 상쇄하고 있다.
- ③ 경찰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찰에 대한 호감도 등이 급속히 저하되었다.
- ④ 경찰이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춘기인 14-16세의 학생들’에 초점을 맞춘(Targeting) 것은 적절하다.
- ⑤ 따라서 경찰측의 보다 현실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태도 전환이라기 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계속적 퇴행을 방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 3. 홉킨스의 보강 실험

홉킨스는 전술한 수량적 기법의 조사를 보강하기 위하여 동일 지역에서 81명의 14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기법으로써 경찰·학교 연계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홉킨스도 학교 연계제도의 목적을 ‘경찰관과 학생들간의 우호적이고 비공식적 접촉을 통한 우호관계의 수립’에 있다고 이해하는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다.

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경찰관상은 ‘경찰력의 행사(the exercise of police power)’로 인식되고 있으나 학교내에서 접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이와는 다른 친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② 학생들은 학교연계 경찰관을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는 다른 임무-예를 들면 사회복지 운동가-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 ③ 따라서 어린 학생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학교연계 경찰관제

도를 통하기 보다는 어린이들이 길거리 등에서 자주 접하는 일반경찰관들의 태도 변화를 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4. 에이본 앤드 섬머셀 경찰의 반응

##### 가. 조직 재정비

상기 전술한 실험결과는 경찰로 하여금 경찰·학교 연계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게 만들었다. 1992년에는 조직 재정비(Force Reconstruction)가 있었는데, 그 작업을 담당했던 팀들은 ‘경찰·학교연계제도를 하부조직인 경찰서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권고하였다. 그 결과 11개 경찰서가 경찰·학교연계제도에 관한 각기 다른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경찰청 단위의 조정과 통합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제 11개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경찰·학교제도는 크게 3가지 모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학교연계 제도에 대한 책임이 지역담당 경찰관(Community Beat Officer-CBO)에 있는 경우이다. CBO란 일정 구역을 배정받아 도보순찰을 하며, 범죄 신고 등에 응하며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경찰관들을 의미한다.

둘째는 경찰서 본부에 1명의 학교연계담당 전종 경찰관을 두어 그로 하여금 고학년 학생들을 담당하게 하고, 저학년들은 전술한 CBO들로 담당하게 하는 2분화된 형태이다.

세번째 형태는 경찰서 본부에 근무하는 2-3명의 지역사회 담당 경찰관(Community Affairs Officer-CAO. 이들의 주된 임무는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 범죄예방 유관기관들과의 업무 조정과 협조등으로서 우리나라 방범계 근무자와 유사함)은 고학년들을, CBO들은 저학년 학생들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위의 세가지 경우 모두에 공통되는 사항으로서는 학교연계 경찰관들을 위한 전문교육이나 교육용 교재등이 제공되지 않았고, 아울러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는 점이다.

##### 나. 실험결과에 대한 반론

본인의 인터뷰 대상이 되었던, 직·간접적으로 경찰·학교 연계제도에 관여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한결 같이 홉킨스 박사 등의 연구에 불만을 표출시켰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되

는데, 그 첫째는 에이본 앤드 섬머셀 경찰내에서 실시되었던 두가지 실험의 공통된 가설이 ‘경찰·학교 연계제도의 목적은 경찰·학생의 관계개선’에만 초점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학교에서의 경찰관의 존재로 인하여 ‘교내폭력(Bullying)이 사라졌다거나, 강력사건 해결시 많은 도움을 받았거나’ 하는 등의 실제적 체험담을 얘기했다. 그중의 한 여자 전종 학교연계 경찰관의 회고에 따르면, “16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런던으로 소풍을 간적이 있는데 수상관저를 견학하게 되었어요. 저는 수상관저를 지키고 있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저는 브리스톨에서 학생들을 인솔하고 온 경찰관인데 수상관저 대문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나요?’라고 물었죠. 그 경찰관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모두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우리 일행은 금속 탐지기를 지나게 되었는데 아! 글썄, 빠하하는 소리가 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해보니 학생들 중 7명이나 칼을 휴대하고 있지 뭐니까. 그 경찰관이 우리에게로 다가와서는 ‘이게 뭐니까?’하고 농담스레 얘기하는데, 학생들 전부하고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학생들이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남들한테 ‘수상관저 앞에서 칼을 휴대하고 있다가 잡혔다’고 얘기하는 대신, ‘우리는 다우닝가 10번지(Downing Street 10)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노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인이 다된 그 애들은 아직도 가끔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우리가 다우닝가 10번지에 갔던 일 생각나세요?’라고 묻곤 합니다.

두 번째의 반발 논거는 경찰의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정 자체의 어려움이다. 한 CAO는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학교연계 제도의 효과를 설명한다.

“오늘날 마약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마약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국제기구들과 각국의 국내기관들이 수 십, 수 백억원 대의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문제는 여전히 세계적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의 마약 억제 정책이 세계 여러 곳 곳에서 수십 키로의 헤로인, 코카인 등등이 압수되고 있듯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경찰의 학교 연계제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판단하며, 저는 홉킨스 박사같은 심리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장 명확한 효과성 측정 방법은 경찰이 학교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중지시키고 나서 그 전후의 청소년 범죄양상 이라든지, 어린이들의 준법의식, 경찰관에 대한 친밀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가정은 경찰 내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학교연계제도의 효과성을 피부로 실감한 학교장들의 적극적 만류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 대안의 모색

인터뷰 도중에 만난 한 경찰관은 홉킨스 등의 연구결과 발표이후 에이본 앤드 섬머셀 경찰의 학교연계제도가 크게 위축되었고, 그결과 ‘목표의 특정화, 전문경찰관의 선발 및 교육, 교육용 교재의 준비, 평가’등 성공적인 학교연계제도를 위한 각종 여건이 미비해 졌다고 판단, 그나름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는 소위 ‘마약 저항교육(Resistance In Drug Education – RIDE)’이라는 프로그램으로서, ‘경찰관과 교사 공동에 의한 교재개발 및 공동강의, 마약문제 중심으로의 목표 특정화, 연령별 교육내용의 차별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의 관할구역의 16세어린이들 중에서 약 44%가 마약에 실험적으로 손대고 있으며 이는 범죄문제에 직결된다는 연구결과에 착안 RIDE 프로그램을 시험운영 하게 되었다. RIDE 프로그램은 5세 – 15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령군에 따라 3가지의 상이한 교재로써 가르치게되는데 12세 – 15세 용의 교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세 – 15세용 RIDE 프로그램

강의번호	강 의 내 용	담 당 자
1	개인 안전(Personal safety)	경찰관
2	사회에서의 마약사용(A drug using society)	"
3	사회에서의 마약남용(A drug abusing society)	"
4	범죄의 위험성과 파급효과(The risk and consequences)	경찰관과 교사공동
5	나의 신체. 응급처치(My body. Dealing with Emergencies)	교사
6	동료간의 압력(Peer pressure)	"
7	언론과 광고(The media and advertising)	"
8	마약의 대체물들(You have a choice alternatives to drugs)	"
9	스트레스의 자각과 대응법 (Stress-How to recognize and deal with it)	"
10	자기에(Self esteem)	"
11	극기(Being assertive)	"
12	권리와 의무(My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13	누구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 있나? – Who can I turn to?	"

위 도표에서 보듯 12-15세용 RIDE 프로그램은 13편의 강의로 구성되는데 처음의 3강의는 경찰관에 의해서 4번째의 강의는 경찰관·교사 공동으로, 그리고 나머지 9시간의 강의는 교사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강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RIDE 프로그램은 마약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도 ‘범죄예방교육,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준법정신, 교내 폭력의 해악성’ 등의 메시지도 전달할 뿐아니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법 집행과 같은 갈등 상황이 아니므로-학생들과의 관계증진 등의 부수효과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담당 경찰관에 따르면 약 2년여의 시험간을 거친후, RIDE 프로그램의 전 에이본 앤드 섬머셀 경찰에로의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한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의 경찰·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첫째, 범죄예방(Crime prevention)에의 과감한 투자이다. 벌써 1951년 부터 리버풀 경찰의 학교 연계제도를 시발로, 80년대 말 에이본 앤드 섬머셀 경찰에서 전종 학교연계 경찰관을 16명으로 운영했던 점에서 그 중요성의 인식정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영국인 특유의 실험정신이다. 홉킨스 등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의 투입이 있으면 그에 대한 효과성이 얼마인지를 측정하고 있다. 셋째는 경찰관 개개인의 투철한 직업의식이다. 누구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RID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더불어 그렇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2년여 넘게 지켜 보고 그 확대 여부를 결정하려는 지휘부의 통솔력과 치밀성 또한 돋보인다 할 것이다.



# ❖ 치안연구소식 ❖

---

연구소 동성

- 치안시책 및 법제동향



## 연구소 동정

### □ 제5회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17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시민, 학생운동 그리고 경찰’이라는 대주제하에 제5회 치안정책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완상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차용석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및 여영무 연합통신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 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로 김일수 고려대 법대학장이 ‘시민의 참여를 통한 협력 치안’을 발표하고 토론에 이형국 연세대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황석하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사무총장이 참여하였으며, 제2주제로 정용석 단국대정경대학장이 ‘과격학생운동과 국민적 대응’을 발표하고 토론에 이상안 경찰대 교수, 서정우 연세대언론홍보대학원장이 참여하였다.

제1주제 발표에 나선 김일수 고려대 법대학장은 민주시민사회의 시민은 치안서비스의 고객일뿐만 아니라 경찰과 함께 치안환경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치안의 주체인 바,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상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과 밀착된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예방과 대민봉사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시민운동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주제 발표에 나선 정용석 단국대정경대학장은 학생운동이 1980년대 후반부터 급진 좌경운동으로 흘러 북한의 주체사상 및 적화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좌익폭력혁명의 전초기지화」가 되었는데,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 대학의 적극적인 학생 지도, 정부, 언론, 기업, 시민의 적극적인 연대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번역서 발간

연구소에서는 지난 11월 11일 「犯罪와 警察」이라는 번역서를 발간 배포하였다.

원제 「警察官の 犯罪捜査マニュアル」이라는 이 책은 일본의 작가 류우잇쿄(龍一京)씨가 경찰관으로 재직시의 체험사례를 바탕으로 일본경찰의 전반적인 조직, 운용에 대한 언급 및 일선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불심검문, 첩보수집, 교통사고처리, 범죄현장의 조치요령 및 직업경찰관으로서의 인간관계론, 승진시험 대처방법등 신임순경 및 보직 전환시 직면하게 되는 직무상 애로점 및 대처방안을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다.

총 4,000여부를 발간 전국과출소, 경찰서,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및 종합학교 등에 배포하였다.

## □ 연구보고서 발간

연구소에서는 '95. 용역연구과제인 '독일 통일과 독일경찰의 조직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교통사고조사시 과학적인 입증에 관한 연구', '경찰관서별 운영효율성 평가', '환경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전문화 방안' 등 총 5건의 연구과제 최종보고서를 연구보고서로 제작, 11월 25일 발간하여 각급 경찰관서 및 도서관, 관련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 □ 연구토론회 개최

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발표 및 실무자 전문가와의 공동토론을 통하여 보다 충실한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도출하고자 9.19

일 '학교주변폭력의 실태조사와 유형의 연구' 등 3개과제, 10. 4일 '환경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전문화 방안' 등 2개과제, 10. 23~25간 '고객만족경영기법의 경찰에의 도입방안 연구' 등 6개과제를 연구지도위원 및 실무부서 경찰관,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 연구용 도서 기증

치안연구소는 지난 11. 19일 박영문화재단(이사장 안종만)으로부터 학술도서 106권을 기증받았다.

기증도서는 도서출판 박영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주로 법학과 행정학 분야 학술도서이며, 치안연구소에서는 자료실에 도서를 비치하여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치안시책 및 법제동향

### □ '96 경찰백서 발간

'95년 한해동안의 경찰활동과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이를 「경찰백서」로 발간하여 11월중 배포할 예정이다.

약 7,000부를 발간하여 파출소단위 전경찰관서와 관계기관, 학계는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폭넓게 배포하여 국민이 경찰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치안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금번 무장공비 침투이후 테러에 대한 사회불안요인을 없애고, 개방화를 틈탄 불법무기류의 밀반입 등으로 야기될 흉악범죄 및 사회혼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관하에 내무 법무 국방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였다.

신고기간은 '96. 10. 15 ~ 11. 15 까지 1개월간이고,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가스총(분사기), 마취총,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도검, 전자총격기, 석궁, 그 밖의 군수용 민수용 무기류 일체이다.

### □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

경찰청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시행령과 동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령)의 주요골자로서 첫째, 시장등이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그 차의 소유자로부터 견인료 보관료 및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한꺼번에 모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영 제11조의2)

둘째,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0년이상 무사고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무사고의 기산점을 종전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신청일」을 기준으로하여 그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무사고인 경우로 조정하였다.(영 제50조 제1항 제7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령(내무부령 제695호)의 주요골자는

첫째,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 설치하게 되어 있는 표지를 한국산업규

격(KS)에 맞도록 조정하고(제23조)

둘째,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적으로 단속되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행하는 자동차사용 정지처분절차 등을 정하고(제63조)

세째, 도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종전에는 9인승이상 승합자동차라도 외관이 짙형인 차량은 통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외관이 짙형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주차위반의 경우 경찰에서 단속하는 때에는 운전면허 별점을 부과하고 시 군 구에서 단속하는 때에는 운전면허 별점이 없으나, 시 군 구에서 단속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차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별점을 삭제하였다.

다섯째,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운전면허별점을 현행 60점에서 9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여섯째,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코스시험과 주행시험으로 분리하여 실시하던 것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도 통합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 □ 도로교통법 개정추진

경찰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각종제도를 도입하고, 기타 현행 도로교통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 하차를 위하여 도로에 정차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토록하고

둘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청장,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차종별, 승차인원별로 일정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특별시 광역시의 구청장 및 군수의 주정차단속권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이관토록하고(특별시 광역시장이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규정 마련)

네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다섯째,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무인과학장비에 의해 단속된 신호위반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추진

불법비디오물감상실업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미신고노래연습장에 대한 종전의 과태료처분을 형사처벌화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의 개정을 추진중인바, 그 주요골자

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공연법상의 소극장업을 삭제하고, 풍속영업의 범위에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추가하는 한편 미신고노래연습장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개정추진

공공의 안전에 위해 우려있는 총포를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주요골자로서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공의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총포 등에 대해 허가관청이 임시영치하던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대상 절차 및 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추진

국민의 집회시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려는 이유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첫째, 학교구내 또는 사인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관리자의 동의없이 개최되는 집회 시위로부터 학원의 안전 및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둘째, 적법한 집회 시위 보호와 질서유지 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경찰보호선 설정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개정추진

화염병을 사용하는 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이유로 의원입법에 의해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관한법률이 개정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그 내용은 화염병 사용 등에 대한 형벌을 무겁게 상향조정하여 화염병 사용등 테러성 폭력시위를 근절코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기타 시책 추진상황

단풍기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임시과출소가 전국주요 유원지 170개소에 10. 1 ~ 10. 31 까지 설치운영되었으며, 아울러 가을철 교통사고방지대책이 9. 1 ~ 11.30일까지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연말 마약류 밀매 투약사범 일제단속이 11.18 ~ 12.31 까지 실시중에 있다.

## □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골자

95. 12. 29 개정 공포된 형사소송법이 97.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하에서는 그 주요 골자를 살피고자 한다.

### 1.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 ○ 체포영장제도 도입

－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적법한 수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체포영장제도 도입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석방

－ 체포 및 구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

－ 체포된 자에 대하여도 적부심사청구 인정

#### ○ 긴급체포 도입 및 현행 긴급구속 폐지

－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사

법경찰관의 긴급체포에 검사의 사전지휘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승인을 받도록 함

－ 구속의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체포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사전영장)을 청구

#### ○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신설

－ 구속의 진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는 피의자심문제도 신설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청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의자를 심문 후 구속영장 발부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심문 후 구속영장 발부

### 2. 인권의 실질적 보장

####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신설

－ 현행 보석제도의 취지를 기소전 단계에 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구속적부심청구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하는 피의자석방제도 신설

－ 석방결정시 주거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 등 조건 부가

－ 도망, 증거인멸, 출석불응 및 조건위반시 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체포 또는 재구속 금지

## ○ 검사의 구속장소감찰 강화

— 감찰대상을 경찰서 외에도 모든 수사관서의 체포 구속장소로 확대하고 불법체포 구속된 자에 대한 검사의 즉시석방명령권을 부여하는 조문 신설

— 모든 수사기관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도모

## ○ 방어권 신장

— 피고인에게 공판조서 외에도 공소계속중인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청구권도 인정

— 구속시 변호인 또는 가족에게 사건명, 구속의 이유 외에 범죄사실의 요지도 통지

## ○ 강제수사의 제한성 천명규정 신설

— 제199조 제1항 단서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 ○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 개선

—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를 임의적인 것에서 필요적으로 변경

## 3.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 ○ 국외도피사범의 공소시효 정지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국외도피사범 처벌모면 방지

## ○ 증거능력 예외사유 추가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원진술자의 사망, 질병 이외에 외국거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도 추가

## ○ 피해자등 보호규정 신설

— 피해자 증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및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보호 및 증거인멸 방지

## 4.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

## ○ 대표변호인제 도입

— 수인의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변호인을 지정

— 서류송달 및 통지의 대상을 대표변호인에게 한정하여 공판 및 수사절차의 지정 방지

## ○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확대

— 합의부 관할사건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하여 자백사건의 신속한 재판 도모

## ○ 권석재판 도입

—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할 경우 권석재판을 허용하는 조문 신설

—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시 권석

재판을 가능케 하는 조문 신설

○ 소송지연목적 기피신청 기각

— 공소지연의 목적임이 명백한 법원기 피신청을 기각사유에 추가하여 기피신청의 남용방지

○ 서류작성 간소화

— 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판결서 외에는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 가능하게하여 재판업무의 능률향상 도모

○ 상소기록의 검찰경유제도 폐지

— 상소기록의 검찰철 경유가 상소심 심리지정의 사유가 되므로 상소기록이 검찰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원간에 송부되도록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를 수정

5. 기 타

○ 위헌조항 삭제

—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규정 삭제

— 무죄가 선고되어도 10년 이상 구형시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토록하는 규정 삭제

—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457조의2)

○ 경제 사회여건 변화 반영

— 현행범체포 및 구송이 제한되는 경미범죄의 범위를 법정형 벌금 5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조정

—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미사건의 범위를 법정형 벌금 1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조정

—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를 5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조정

# ❖ 현장제언 ❖

---

• 경 찰 단 상



# 경 찰 단 상<sup>1)</sup>

임 호 선

(중앙경찰학교 학생계장)

## □ 경찰관의 행복찾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경찰이 하는 일은 누가 봐도 좋아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한여름 아스팔트 한 가운데서 비오듯 하는 땀을 닦아가며 교통정리를 하는일, 그 무거운 방석복을 입고 데모를 막는 일, 교통사고, 고소, 고발 등 각종 민원사건 처리 등 그야말로 골치아픈 일들이 우리의 주된 일과이기 때문입니다.

파출소, 경찰서를 오가는 분들은 너무나없이 아픈 사연을 안고계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골치거리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 경찰이란 직업이기에 그리 유쾌하지 못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마음들이 상하고, 큰 소리가 오가는 경우도 있구요.

처음 얼마간은 경찰관의 보람같은 것을 가늠하다가도 이내 짜증 속에서 사는 그런 경우를 아주 자주 보게되며, 어느샌가 스스로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말처럼 또 그렇게 속고(?) 살게도 되더군요.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경찰의 길!”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야할 모두들! “행복”속에서 희망찬 경찰의 미래, 풍요로운 자신의 삶을 가꾸시길 손 모으며...

이런 글귀를 전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 □ 여자경찰에 대하여

— 얼마전 여경창설 몇주년을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의 뉴스거리로 여겨지는 것을 보면

1) 중앙경찰학교 근무 임호선 경감의 「발전」지 수록 내용 중심으로 수록 하였음

서 어디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면 ‘경찰’ 이기에 앞서 ‘여자’가 강조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폴리스우먼’의 관점에서 오늘과 내일을 지나해야 할 것이다.

—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라 하면서도 성폭력피해자조차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는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 폭력, 청소년문제 등 산적한 과제 속에서 여자이기에 더욱 프로경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를 바란다.

## □ 내가 경찰을, 경찰이 나를

우리는 주위에서 마지못해 경찰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대부분 경찰의 일을 통해 만족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불평 속에서 살며, 스스로와 우리조직을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경찰이란 직업을 누군가에게 권하랴 한다면 자신있게 선뜻 권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경찰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생각도 자리합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능성일까를 생각한다면 더욱 더 그러합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경찰이 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나에게 경찰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보다, 경찰에게 나는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까요

## □ 경찰이란 무엇인가(1)

누군가 길을 잃었다면 먼저 누구를 찾으세요? 바로 경찰입니다.

그렇다면 길안내는 경찰의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만약 경찰관이 길안내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일까요, 아닐까요.

사람들이 시위를 합니다. 때로 돌과 화염병을 던지기도 합니다. 경찰이 시위를 진압합니다.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쏘며, 시위군중을 연행합니다. 그리고 단순가담자는 ‘훈방’합니다.

단순가담자라 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입건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아닐까요? ‘훈방’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있는 걸까요?

길을 가다보면 경찰관이 검문검색, 또는 음주단속을 합니다.

특정 범인검거가 아닌 단순 범죄예방 차원이거나,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만의 고유임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경찰의 고유임무로 볼 수 있는 영역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어느 언론사와 다른 어느 기관에서 범죄에 방자원봉사자 운운하는 무슨 대회인가, 뭔가를 합니다. 범인검거가 아닌, 범죄예방에 있어서 경찰이 제3자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들로 ‘경찰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봅니다.

## □ 「공권력 파괴」의 시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최일선 파출소가 습격을 당해 경찰관이 죽고 총기를 뺏기다니 우리 공권력의 처지가 말이 아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경찰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을 보는 범죄자의 시각이다. 지금 우리의 경찰 공권력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의 경찰에 비해 위상도 낮아졌고, 기능도 약해졌다.

따라서 사기도 크게 저하돼 있다. 지자체 실시와 더불어 경찰의 구조적 개편문제도 심각하다. 지금 경찰에 적극적 기능이 있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데모진압 정도이고 일반치안은 2선에 밀려있는 느낌이다.

돌과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경찰은 한낱 교통정리나 「경비원」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진대 경찰을 보는 시민의 눈도 예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옛날 「순사가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칠

정도의 무서운 경찰은 배격해야겠지만 지금처럼 경찰 알기를 우습게 아는 풍조는 정말이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사건이 나면 경찰이 귀찮다며 오히려 자리를 피하고 경찰이 개입하면 옛날 옆집 무엇부리듯 깔보는 상황은 서로 연관돼 있다. 이번 사건도 따지고 보면 경찰관과 경찰서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다. 과거의 범죄자 같으면 언감생심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을 때리고 총기를 뺏을 생각을 했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의 공권력은 위험수준에 와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국은 이점을 알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파출소 폭력살인 사태가 아니라 「국가」의 권능자체가 공공연하고도 예사로 묵살당한 중대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일선 경찰관서가 이처럼 자체 보안에 취약한 상태라면 관내 치안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파출소를 비롯한 전 경찰관서의 보안태세를 전면점검,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려내 보완하고 경찰관들의 근무자세와 총기관리 상태도 함께 살피고 개선했으면 한다. 민주화나 문민화는 국가 공권력의 법치화이지 무력화나 기능약화일 수 없다.

— 조선일보/ 8.10字/社說 —

## □ 경찰이란 무엇인가(2)

“지역치안유지의 목적은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젊은 엄마가 주택단지에서 살고 있는데, 그녀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차를 몰아 타이어 끄는 소리가 나자 대경실색하여 경찰을 불렀다면 경찰은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 경찰이 다른 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한다면(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공공서비스를 실천할 기회를 간과하는 것이다. 타이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아마도 술에 취해 있거나, 무면허일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있음이 분명하다. 경찰이 그 차에 힘을 쏟는다면 우리는 그 애기엄마의 교통의 위험으로 인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나아가 아마도 동시에 몇몇 범법자를 검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은 경찰기능 중 어느 것도 배타적인 것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미국의 경찰관련 잡지에 실렸던 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이 경찰의 목적을 가장 잘 함축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범죄와 폭력, 교통사고는 물론 마약, 윤락, 사행행위, 환경오염, 불법시위, 노사분규, 안전사고, 산불, 태풍 등 자연재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누군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가장 먼저 경찰이 나서서 직접 해결하지, 적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타부처 협조업무'라는 소극적 인식으로 대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찰의 기능퇴화, 무기력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은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서해 훼리호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대형참사에 대해서 조차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경찰이라면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소방경찰의 분리에 이은 이번 해양경찰의 이관처럼 「경찰조직적」인 부문보다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형사피해자 구조, 과적차량단속, 범죄신고자 보호, 환경사범/컴퓨터범죄/마약사범 단속 등 「경찰기능적」인 부문이 더 큰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정책방향(치안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이 면밀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여겨봅니다.

일본경찰의 경우 70년대 초반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년에 걸쳐 환경범죄전담수사관을 충원하고 94년 부터는 회계재무/컴퓨터/국가별 전문수사관제를 도입했다든가,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 등이 경찰의 중요시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든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 치안연구소 연구자료 안내

95-01	의사경찰의 국제화 전략	96-01	치안여건의 차이에 따른 방법활동 체제 연구
95-02	운전면허 관리제도 개선	96-02	경찰교육제도 개선 방안
95-03	교통경찰 행정의 발전방향	96-03	사용자 중심의 휴대용 경찰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95-04	교통사고처리의 신뢰성 제고방안	96-04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경찰조직의 변화
95-05	음주운전사고대책과 처리시스템 확립방안	96-05	진압장비 개선에 관한 연구
95-06	각계각층의 통일논의에 대한 연구	96-06	경찰인사제도 개선방안
95-07	집단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96-07	출입국 관리와 치안대책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95-08	경찰장비관리운영 실태분석	96-08	첨단과학장비를 이용한 교통단속 체계의 구축
95-09	경찰관 사기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96-09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연구
95-10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과 국민의 협력강화 방안	96-10	수사요원 전문화 방안
95-11	자동차보험제도 개선과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96-11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 제도
95-12	우리의 집회시위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집회시위제도 비교 고찰	〈치안논총 제 11집〉	
95-13	경찰에 있어서 위성통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공무원 임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li> <li>• 파출소 방법활동체제 개선방안</li> <li>• 민간방법역량 강화를 위한 사경비제도 발전 방안</li> <li>•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정책평가</li> <li>• 경찰장비와 인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li> <li>• 테러리즘과 그 법적 대응책</li> </ul>	
95-14	언어를 통한 경찰이미지 개선방안	〈치안논총 제12집〉	
95-15	교통감시 및 통제를 위한 화상감지 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행정업무의 계량적 지표체계 개발</li> <li>• 경찰업무전문화를 위한 자격정책방안 연구</li> <li>•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자원 확보방안</li> <li>• Police Line의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li> <li>• 관서별·기능별 장비보유 모델 개발</li> </ul>	
95-16	생물학적 증거물 채취KIT개발		
95-17	경찰사회사업가제도 도입 활용방안		
95-18	경찰관 성과평가 척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95-19	경찰작용법에 관한 연구 -경찰강제권에 대한 근거법의 정비를 중심으로-		
95-20	음주운전 측정장치의 정도관리		

## 원고 응모 안내

1. 치안행정에 대한 시민의견, 관련학계의 논문 등을 모집합니다.
2. 치안현장에서 느낀 일선 경찰관의 조직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3. 치안연구소는 여러분 주장의 시책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 감사의 뜻으로 보내주시는 원고에 대한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치안연구소 안내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경찰청 215호		
팩 스	경비 8-3178/일반(02)365-2223		
전 화	실 별	경 비	일 반
	치안행정 제 1 연구실	8-3171	365-2240
	치안행정 제 2 연구실	8-3179	365-4808
	범죄대책 연구실	8-3172	365-2240
	과학기술개발 연구실	8-3174	365-2241
	사회안정대책 연구실	8-3175	365-2241
	교통대책 연구실	8-3173	365-4808
	연구운영계	8-3176	365-2242

## 치안정책연구

발행일 : 1996년 12월

발행인 : 김 본 식

발행처 : 치안연구소

인쇄처 : 대한문화사

본지수록 내용은 치안연구소나 경찰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비매품>

